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학부모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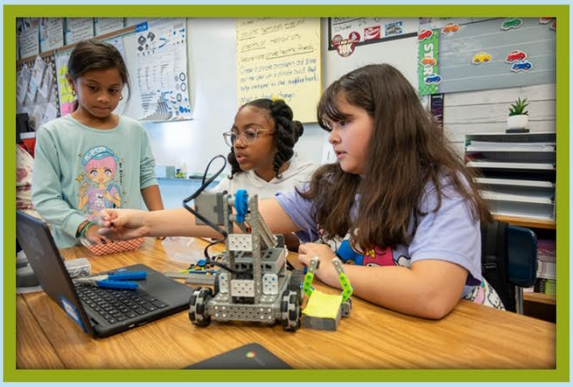

핸드북

2025-2026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가족 여러분께,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끈끈한 협력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학업적으로 풍요로운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150 여 개 언어와 문화권에서 온 50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미국에서 가장 다채롭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게 된 점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부모·학생 핸드북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핸드북은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의 소통을 돕고,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필수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교육 과정, 건강과 복지, 형평성과 접근성, 학생 생활 규정, 학교 안전, 통학 서비스 등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 관한 중요한 정책과 절차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이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가정이 자녀의 교육 과정을 자신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핸드북에는 교육 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정신 건강 상담, 학부모 참여 기회 등 학생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핸드북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 해 동안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구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LAUSD 모바일 앱 3.0 을 다운로드하시고 교육구의 소셜 미디어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팔로우하시면 더욱 쉽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때, 모든 학생이 소속감을 느끼고, 모든 가정이 지원받으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Alberto M. Carvalho
교육감

사무실 연락처

교육 위원회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 (213) 241-6389
팩스 (213) 241-8953

셜렛 헨디 뉴빌 (SHERLETT HENDY NEWBILL) –교육구 제1지구
전화 (213) 241-6382 팩스 (213) 241-8441
본사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5120 11th Avenue, Los Angeles, CA 90043
전화 (323) 298-3411 팩스 (323) 298-3406
이메일: sherlett.newbill@lausd.net

로시오 리바스 박사 (DR. ROCIO RIVAS) – 교육구 제2지구
전화 (213) 241-6020
본사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4540 Michigan Avenue, Los Angeles, CA 90022
이메일: rocio.rivas@lausd.net

스콧 슈머렐슨 (SCOTT SCHMERELSON) –교육구 제3지구
전화 (213) 241-8333 팩스 (213) 241-8467
본사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6621 Balboa Blvd., Lake Balboa, CA 91406
전화 (818) 654-3785 팩스 (818) 654-3788
이메일: scott.schmerelson@lausd.net

닉 멜보인 (NICK MELVOIN) – 교육구 제4지구
전화 (213) 241-6387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nick.melvoin@lausd.net

칼라 그리에고 (KARLA GRIEGO) – 교육구 제5지구
전화 (213) 241-5555
본사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2973 Zoe Avenue, Huntington Park, CA 90255
전화 (323) 826-1570
이메일: karla.griego@laus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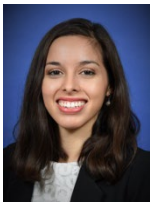

켈리 고네즈 (KELLY GONEZ) – 교육구 제6지구
전화 (213) 241-6388
본사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Pacoima MS – 9945 Laurel Cyn. Blvd., Pacoima, CA 91331
전화 (818) 686-4560
이메일: kelly.gonez@lausd.net

타냐 오티즈 프랭클린 (TANYA ORTIZ FRANKLIN) – Board District 7 교육구 제7지구
전화 (213) 241-6385
본사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남부 지역 (Region South) – 1208 Magnolia Ave., Gardena, CA 90247
전화 (310) 354-3506
이메일: tanya.franklin@lausd.net

사무실 연락처

ALBERTO M. CARVALHO
교육감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 (213) 241-7000
팩스 (213) 241-8442
이메일: superintendent@lausd.net

지역 사무소

북부 지역
6621 Balboa Boulevard
Lake Balboa, CA 91406
(818) 654-3600

남부 지역
1208 Magnolia Avenue
Gardena, CA 90247
(310) 354-3400

동부 지역
2151 North Soto Street
Los Angeles, CA 90032
(323) 224-3100

서부 지역
11380 West Graham Place
Los Angeles, CA 90064
(310) 914-2100

주요 부서

방과 후 프로그램 (Beyond the Bell)	(213) 241-7900	학교 간 체육부	(213) 241-5847
교육 위원회 사무국	(213) 241-7002	KLCS 채널 58	(213) 241-4000
예산 서비스	(213) 241-2100	마그넷 프로그램 (Magnet Program)	(877) 462-4798
차터 스쿨 부서	(213) 241-0399	시설 유지 및 운영	(213) 241-0352
데이터 및 성과관리	(213) 241-2460	의료 서비스 부서	(213) 241-6326
교육구 간호 서비스	(213) 202-7580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	(213) 241-6766
교육구 서비스 센터	(213) 241-1000	비상 관리실	(213) 241-3889
성인 및 직업교육 부서	(213) 241-3150	환경 안전 보건실	(213) 241-3199
교육과정 부서	(213) 241-5333	감사관실	(213) 241-7700
학교 운영 부서	(213) 241-5337	재정관리실	(213) 241-7888
특수교육 부서	(213) 241-6701	법무실	(213) 241-6601
유아교육 부서	(213) 241-0415	학생·가정·지역사회 참여국	(213) 481-3350
기회 균등 부서	(213) 241-7685	학생 인권 보호 부서	(213) 241-7682
시설 관리부	(213) 241-4811	인사 위원회	(213) 241-7800
급식 서비스 부서	(213) 241-6419	학교 경찰국	(213) 625-6631
인사 관리부	(213) 241-6131	학생 정신건강 및 복지 서비스국	(213) 241-3848
정보기술 서비스	(213) 241-5200	교통 서비스 부서	(213) 580-2900

목차

교육 과정 및 수업 1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 영어 능력 평가(ELPAC) 1

- 자녀를 언어 습득 프로그램 등록 방법 1
- 캘리포니아 영어 능력 평가 (ELPAC) 1
- 재분류를 위한 학업 및 영어 발달 진도 모니터링 (종결 기준) 2
- 모든 학생을 위한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해력 (UTK–12 학년) 2
- 다국어 다문화 교육부(MMED) 가정용 디지털 자료 2
- 타이틀 VI 아메리카 원주민 교육 프로그램 2
- 원주민 학생 자가 식별. 2
- 교육 기술 이니셔티브 (ITI) 2

체육 교육 이수 요건에 대한 연례 안내 2

체력 검사 3

과학 수업 내 보존 또는 생물 동물 사용에 대한 대체 활동 3

건강 교육 및 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포괄적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 준수 안내 3

교내 체육 활동부 5

- 학생 상해 보험 6

고등학교 졸업 요건 6

- 고등학교 졸업 요건 면제 7

교육 옵션 학교 7

버추얼 아카데미 (VIRTUAL ACADEMY) 7

성인 및 직업 교육부(DACE) 8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기 평가 프로그램 (CSU-EAP) 8

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척도 평가(CAASPP) 8

대학 입학 요건 및 고등 교육 정보 9

- CSU 신입생 입학 요건 9
- UC 신입생 입학 요건 9
- SAT/ACT Test Scores 9

이중 등록 및 국제 바칼로레아 (IB) 과정 9

공정성과 접근성 10

차별 금지 선언문 10

인터넷 접속 10

방과 전후 프로그램 이용 안내 11

이민 신분, 시민권,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는 교육 평등 보장 11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른 공지사항. 11

장애 학생 및 특수 교육 12

1973 년재활법 제 504 조(Section 504)에 따른 장애 학생 12

일시적 장애 학생 13

제 9 조(타이틀 IX) 및 학생 권리 13

성희롱 예방 정책 13

노숙자 학생 지원 14

위탁 보호(foster care)를 받고 있는 학생 15

청소년 사법 제도에 연루된 학생 15

통합 민원 절차(UCP) 16

윌리엄스 통합 민원 절차 17

건강 및 웰빙 18

웰빙 정책 기본 계획 18

건강 정보 18

- 전염병 예방 18
- 당뇨병 19
- 예방접종 요건 19
- 학교 내 약 복용 19
- 구강 건강 평가 20
- 현장 학습 시 의료 지원 20
- 신체 검사 20
- 학교 정신 건강 21

- 학교 정신 건강 클리닉 및 웰니스 센터 개요 및 접수 절차 21
- 자살 예방, 개입, 사후 관리 21
-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웰니스 센터 21

간호사-가정 연계 프로그램 21
학교 기반 메디칼 및 정신건강 서비스 21
학생 건강 보험 22
건강 및 웰빙 원격 의료 서비스 22
학부모/보호자 연간 공지: 콘돔 제공 프로그램(CAP) 22

영양 서비스 22

식품 서비스 부서 (Café LA) 22
- 영양 및 Café LA 메뉴 22

학부모 및 가족 참여 23

학생,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사무실 23
-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23
- 의견 존중 23
- 관계 강화 24
- 학부모 자원 봉사자 24
- 학부모 포털 및 모바일 앱 24
- 패밀리 아카데미 24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가족 헬프 데스크 24
교실 참관 24
학교 책무 보고서 25
모든 학생 성공법(ESSA): 타이틀 I 학교 학부모 알 권리 안내 25
특수교육: 학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SFSS) 25
학부모 포털(Portal) 2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5
커넥트(Connect) 알림 시스템 26
- 커넥트에 어떤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나요? 26
- 커넥트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26
- 중요한 전화 수신 팁 26
- 일반 알림 수신 거부 (Opt-out) 26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가족 지원 헬프 데스크 26
직원 헬프 데스크 27
LAUSD 가족 및 직원 대상 정보기술 서비스(ITS) 지원 센터 27
배상 27
- 비상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27

언론 접근 및 홍보 28

학교 출석 28

거주지 학교 28
학사 일정 28
학생의 학교 선택 옵션 28
학생 전학 허가 및 절차 29
- 학군 간 전학 허가 29
- 교육구 내 전학 허가 29

출석 30
- 캘리포니아 의무 전일제 교육법 30
- 결석 사유 확인 30
- 공결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 30
- 무단 결석 31
- 무단 결석 학생 31
- 무단 결석 통지 32
- 상습 무단결석 및 학교 출석 심의 위원회(SARB) 32

외국인 학생 입학 사무실(FSAO) 32

학생 행동 수칙 및 학교 안전 32

모든 학교를 안전하게: 안전 설계도 (Blueprint for Safety) 32
우리는 하나 32
통합 학교 안전 계획 (Integrated Safe School Plan, ISSP) 32

학교 방문객 안내 32
외부 음식 및 음료 배달 금지 33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SRTS) 33
학생에 대한 행동 수칙 33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회복적 실천(PBIS/RP) 34
학생/학교 행동 규범 34
정치적 행동, 집회, 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34
복장 규정/교복 34
-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생 복장 지침 34
괴롭힘 및 신고식 금지 정책 (Bullying and Hazing Policy) 35
학생 개인 소지품 36
스마트폰 및 기타 보조 전자기기 36
책임 있는 사용 정책 (RESPONSIBLE USE POLICY) 36
학교 자산 관리 36
학생 수색 37
징계 및 퇴학 37
정학/퇴학 사유 37
- 퇴학 권고 사항 38
- 학생 성적 비행(Student Sexual Misconduct) 38
- 장애 학생의 정학 및 퇴학 39
- 정학 및 기회 전학에 대한 항소 39
- 퇴학 후 재활 및 복학 39
기회 전학 39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및 폭력 – 예방 및 금지 39
합성 약물의 위험성 40
비상 대응 40
로스앤젤레스 학교 익명 신고(LASAR-LAUSD) 모바일 앱 40
총기 안전 보관 40
총기 없는 안전한 학교 40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41
석면 및 납 관리 41
캘리포니아 메건 법(Megan's Law) 통지 41
의심되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 42
학생 기록 42
학생 기록 열람, 검토 및 내용 이의 제기에 대한 학부모 권리 42
주소/비상 연락처 변경 42
이름/성별 표기 변경 요청 43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 따른 권리 안내 43
- 학생 권리 보호 개정법(PPRA) 45
성적 변경 요청 절차 45
학교 경험 설문조사 45
통학 서비스 46
스쿨 버스 46
- 스쿨 버스 내 행동 규칙 46
메트로 GoPass TAP 카드 46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 영어 능력 평가(ELPAC)

자녀를 언어 습득 프로그램 등록 방법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자녀가 처음 학교에 등록할 때 받는 수업 프로그램 등록 및 배정에 대한 초기 학부모 통지서를 통해 원하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한 언어 프로그램이 현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교는 자녀의 이름을 해당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일정 인원 이상이 요청되면 프로그램 개설을 고려합니다. 또한 학교는 해당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인 다른 학교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인근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한 학교에 30 명 이상의 학생(또는 동일 학년에 20 명 이상)의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특정 언어 습득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법 제 310(a)조] 학교는 기준 인원이 충족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보호자의 요청(구두 요청 포함)을 다음의 항목과 함께 3 년간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1) 요청 날짜; (2) 학부모/보호자 및 자녀의 이름; (3) 요청 내용에 대한 설명; (4)자녀의 학년. 모든 학교는 학기 중 언제든지 학부모의 요청을 수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영어 원어민 학생의 학부모 요청도 함께 고려하여 기준 인원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규정 제 5 권 11311 조]. 아래 나열된 모든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생들의 이중 언어 및 영어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의 문화적 언어적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존중하며,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최선의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아래의 수업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제 310(a)조]:

초등 및 중등 교육 프로그램(K-12)	현재 제공 언어	대상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양방향 몰입 프로그램(TWI) (K-12)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만다린), 스페인어	영어 학습자 및 영어 원어민 학생
이중 언어 교육: 단방향 몰입 프로그램(OWI) (K-12)	한국어, 스페인어	해당 언어권 영어 학습자
이중 언어 교육: 세계 언어 몰입 프로그램(WLI) (K-12)	중국어(만다린),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원어민 학생
*영어 언어 및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L2EAP) (K-12)	영어	영어 학습자 (ELPAC 레벨 1-2)
일반 영어 프로그램 (K-12)	영어	영어 학습자 (ELPAC 수준 3 및 4) 및 영어 능숙자 학생, 장기 영어 학습자 가능성이 있는 영어 학습자 및 장기 영어 학습자 포함
국제 신입생 프로그램 – 모국어 병행 수업 포함 (6–12 학년)	영어	신규로 지정된 영어 학습자(3 년 이하)

*영어 언어 및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L2EAP)은 교육구가 제공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구조화된 영어 몰입(Structured English Immersion, SEI)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05(a)(2), 제 306(c)(3)조]

모든 언어 수업 프로그램은 다음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년 수준의 영어 능력 개발, 주에서 채택한 학업 기준 달성, 이중 언어 능력 및 문해력 향상, 목표 언어와 영어 모두에서 학년 수준의 학업 성취,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사회·문화적 역량 향상.

자세한 수업 프로그램 정보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거나 MMED 웹사이트에서 마스터 플랜 안내서 및 영상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영어 능력 평가(ELPAC)

가정 내 사용 언어 설문(Home Language Survey) 결과를 바탕으로, 주법은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새 등록 학생에 대해 초기 영어 능력 평가(Initial ELPAC)를 실시할 것을 교육구에 요구합니다:

1. 초기 ELPAC 평가는 등록 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영어 학습자를 위한 초등/중등 교육 프로그램 등록 및 배정 통지서*'를 통해 이 요구 사항을 알릴 것입니다;

2. 초기 ELPAC 결과 영어 학습자로 판별될 경우, 학생은 재분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년 종합 ELPAC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컴퓨터 기반 ELPAC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거나 caaspp-elpac.org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재분류를 위한 학업 및 영어 발달 진도 모니터링 (종결 기준)
학생들의 영어 발달 및 학업 성취도는 재분류 기준을 최대한 빨리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지원됩니다. 주 정부 요구사항에 따라, 영어 학습자(EL) 학생이 재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준 1: 영어 능력 평가 (ELPAC 종합 점수 전체 레벨 4 획득);
2. 기준 2: 교사 평가 (영어 언어 예술(ELA) 과목에서 합격 점수/성적 취득 또는 영어 학습자 교사 관찰 평가표 기준 충족);
3. 기준 3: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의견 및 상담;
4. 기준 4: 기초 학업 능력 평가 [DIBELS (K–2학년) 또는 i-Ready 독해 진단평가 (3–12학년)].

재분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USD 재분류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재분류가 완료된 후에도, 학생의 학업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4 년간 학업 진행 상황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해력 (UTK–12 학년)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이중 언어 및 문해 능력을 증명하는 학생들을 공식 인정합니다: UTK~1 학년: 이중 언어 습득 약정(Promise to Bilingualism); 3, 5, 6, 8 학년: 이중 문해력 달성 경로(Pathway to Biliteracy); 12 학년: 이중 언어 능력 뱃지(Seal of Biliteracy Awards). 이 프로그램들은 영어 외 1 개 이상의 언어에서 일정 수준의 능력을 입증한 학생들에게 수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MMED 세계 언어 교육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다국어 다문화 교육부(MMED) 가정용 디지털 자료
MMED 는 가정에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무료 지원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에는 가족이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과 실질적인 팁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MED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타이틀 VI 아메리카 원주민 교육 프로그램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려면,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아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디언 학생 자격 증명서(ED 506 양식), 연방 정부 인정 부족 구성원 증명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교육 기준 충족 지원
2. 원주민 언어, 역사, 전통, 문화 교육
3. 문화 행사 참여 기회

또한 학부모님들은 타이틀 VI 아메리카 원주민 학부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itle VI 아메리칸 인디언 및 원주민 교육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원주민 학생 자가 식별
연방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기타 원주민 학생의 학부모는 자발적으로 자녀의 원주민 신분을 자가 식별하는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틀 VI 아메리카 원주민 및 원주민 교육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교육 기술 이니셔티브(ITI)
교육 기술 이니셔티브(ITI)**는 학교 리더를 위한 전문 학습 기회와 가족을 위한 자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효과적으로 교육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ITI 가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시민의식 (Digital Citizenship), 컴퓨터 과학 교육(Computer Science Education), 보충 디지털 학습 도구, 마인크래프트 e 스포츠(Minecraft Esports).

디지털 시민의식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안전의 중요성과 이것이 대학 진학 및 진로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르치는 지속적인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ITI 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 시민의식 주간을 주최합니다. 또한, 컴퓨터 과학 교육 주간은 기술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충 디지털 도구 및 마인크래프트 e 스포츠는 학생들의 창의성, 협업,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만 13 세 이상의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책임 있는 기술 사용 지침(Responsible Use Policy, RUP)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리소스를 포함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자녀의 디지털 환경을 보다 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는,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시민 역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및 보호자 리소스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체육 교육 이수 요건에 대한 연례 안내

1~6 학년 초등학생은 매 10 일간 수업일 기준 최소 200 분 이상의 체육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초등학교는 각 교사의 체육 수업 일정표를 학교 웹사이트 또는 교실 및 학교 행정실에 게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먼저 자녀의 교사나 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1210(a)(7)조]

중등학생은 매 10 일간 수업일 기준 최소 400 분 이상의 체육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법 제 51222(a)조]

체육 수업 관련 민원 제기. 자녀가 법적으로 요구된 체육 수업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양식은 학교에서 직접 받거나,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 관련 민원 양식 다운로드 (PDF) 작성한 민원서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교의 답변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구 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검사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 5, 7, 9 학년 학생은 체육 수업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체력 검사(PFT)를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주에서 채택한 체력 검사는 FITNESSGRAM®으로, 건강 관련 체력을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의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거나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achieve.lausd.net/Page/7587

PFT 는 주 전체 평가 시스템의 일부로,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FITNESSGRAM®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평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5 학년, 7 학년, 9 학년 학생들을 위한 연례 신체 체력 검사(PFT)로 FITNESSGRAM®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학생과 가족이 기타 정보와 함께 활용하여 전반적인 체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학교는 이를 통해 자체 체육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TNESSGRAM®은 다음 5 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신체 상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1. 심폐 지구력;
2. 복부 근력 및 지구력;
3. 상체 근력 및 지구력;
4. 척추 기립근 유연성;
5. 전신 유연성.

검사는 2 월~3 월 사이에 실시됩니다. 교사와 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이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와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연중 정규 체육 수업 내에 이러한 연습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FITNESSGRAM® 면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체력 검사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1. 자녀와 PFT에 대해 대화하며, 불안감을 줄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십시오;
2. 자녀에게 부모와 교사가 함께 돕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응원해 주십시오;
3. 자녀가 매일 6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4. 검사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력 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청(CDE)의 학부모 가이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de.ca.gov/ta/tg/pf/index.asp

과학 수업 내 보존 또는 생물 동물 사용에 대한 대체 활동

과학 실험에서 동물 사용에 대해 도덕적인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는 학생은 대체 활동을 제공받거나 실험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해당 실험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이 포함된 요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공되는 대체 과제는 원래 실험과 동등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교육법 제 32255.1 조 및 교육구 정책 기준]

건강 교육 및 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포괄적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 준수 안내

성장, 발달, 성 건강 교육은 5 학년, 7 학년, 9 학년에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채택한 K-12 보건 교육 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며, 캘리포니아 교육법(EC) 제 51930~51931 조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법(CHYA)' 이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5 학년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국(Instruction Division) 보건교육부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7-12 학년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성 건강 및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예방 교육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법 제 51930-51939 조). 차터스쿨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교육법 제 51930 조):
1. 학생들이 HIV 및 기타 성 감염병(STI),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성 건강 및 생식 건강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2. 학생들이 청소년기 성장과 발달, 신체 이미지, 성별, 성적 지향, 인간관계, 결혼, 가족에 관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성은 인간 발달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인식을 증진합니다;

4. 학생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편견 없는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명확한 지도 방법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5. 학생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안전한 인간관계와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EC 제 51931 조)에 따른 용어 정의입니다:

1. **연령 적절성(Age Appropriate)**: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수준(인지, 정서, 행동 발달)에 적합한 주제, 메시지 및 교수 방법을 의미합니다;
2. **포괄적 성 건강 교육(Comprehensive Sexual Health Education)**: 인간 발달과 성에 대한 교육으로, 임신, 피임, 성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영어 학습자(English Learner)**: 연방법에서 정의하는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학생을 의미합니다;
4. **HIV 예방 교육(Human Immunodeficiency Virus Prevention Education)**: HIV 및 AIDS의 특성, 감염 경로, 감염 예방 전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및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는 교육을 말합니다;
5. **적절한 과정을 이수한 교사(Instructors Trained in the Appropriate Courses)**: 인간의 성, 건강한 관계, 임신, HIV 및 기타 성 감염병에 대해 최신 의료적 지식과 정보를 갖춘 교사를 의미합니다.
6. **의학적으로 정확한(Medically Accurate)**: 과학적 방법에 따라 수행된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으며, 필요 시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발표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공중보건학회, 미국 소아과학회, 미국 산부인과학회 등의 관련 전문 기관에 의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7. **교육구 (School District)**: 카운티 교육위원회, 카운티 교육감, 캘리포니아 청각장애인 학교, 캘리포니아 시각장애인 학교를 포함합니다.

중학교(15-20 시간) 및 고등학교(25-30 시간) 과정에서 최소 1 회 이상,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강사에 의해 포괄적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1. 교육구는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인간의 발달과 성에 대한 교육으로, 임신, 가족계획, 성병(STD)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진행됩니다.
2. 교육구는 훈련받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직원이나 인간의 성, 임신, 성병에 관한 최신 의학적 연구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과 자료는 가르치는 연령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에 적합해야 합니다;
   - 모든 교육 정보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는 과학적 연구 방식에 따라 수행된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거나 동료 심사를 거쳐 발표된 연구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연방 기관 또는 건강 분야의 전문가 단체에 의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교육 내용과 자료는 법 제220조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 교육은 기존 교육과정과 일치하며 영어 학습자[제306조 (a)항에 설명된]에게 동등한 기회로 제공되어야 하며, 영어 학습자를 위한 대체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과 자료는 모든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을 조정하거나, 보조 자료, 수업 방식, 보조 기기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교육 내용과 자료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성적 지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관계나 커플에 대한 논의와 예시는 동성 관계를 포함하여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 교육 내용과 자료는 성별, 성 표현,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고,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이 미치는 해악을 탐구해야 합니다;
   - 교육과 자료는 학생들이 부모/법적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인간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과 자료는 결혼과 같은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그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 교육과 자료는 상호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며 폭력, 강압, 협박이 없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과 자료는 성에 관한 건강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또래 압박을 극복하고 위험 수위가 높은 활동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 결정 기술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상 및 거부 기술이 포함됩니다;
   - 교육과 자료는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중등 교육과정(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7 학년과 9 학년에 90 시간 분량의 한 학기 보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수업은 보건 과학 과목 단일 과목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보건 교육 과정에는 종합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 교육은 다음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HIV 및 기타 성 감염병의 특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 HIV 및 기타 성 감염병이 전염되지 않는 경로에 대한 교육. 특정 행동, 성적 활동, 주사 약물 사용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 포함;
   - 성적 활동과 주사 약물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HIV와 성 감염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며, 성관계를 절제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교육. 성적 활동을 늦추는 가치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HIV, 기타 성병 및 임신을 예방하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도 함께 제공;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모든 HIV 및 성병 예방/감염 위험 감소 방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 노출 전 예방요법(PrEP) 같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사용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에 따른 HIV 백신 접종 정보 포함;
   - 주사 바늘 사용 및 공유를 줄임으로써 주사 약물 사용으로 인한 HIV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
   - HIV 및 기타 성 감염병 치료에 대한 교육.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HIV 감염자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고 타인에게 HIV를

전파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 포함;
- HIV 및 AIDS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낙인, 잘못된 편견이나 신화를 바로잡으며, HIV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과 동일한 수명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누구나 HIV 감염 위험이 있으며, 유일한 확인 방법은 검사를 받는 것임을 강조;
- 7학년부터는 지역 자원 정보, 학생들의 성·생식 건강 관리(검사 및 치료 포함)를 위한 지역 자원 접근 권리, 임신 예방 및 관리, 성폭력 및 친밀한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 모든 FDA 승인 피임 방법(응급 피임 포함)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 임신 교육에는 양육, 입양, 낙태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임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 포함;
- 출생 후 72시간 이내 신생아 물리적 양육권 포기에 관한 법률(건강 및 안전법 제1255.7조, 형법 제271.5조) 정보 제공;
- 산전 관리의 중요성 교육;
- 성희롱, 성폭행, 성적 학대, 인신매매, 건강한 경계 설정 기술 및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포함;
- 청소년 연애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초기 경고 신호 포함)에 대한 정보 제공.

2. 교육구가 7학년 이전에 포괄적 성 건강 교육을 실시할 경우, 위 1~13항의 일반 주제들에 대해 연령에 적합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7학년부터 또는 그 이전에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학군은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외부 강사 및 초빙 연사는 LAUSD 교육과정국 산하 보건 교육 프로그램 및 HIV/AIDS 예방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내 및 학부모 면제 요청 관련 사항: 학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자녀와 성, HIV 등에 대해 대화하도록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 자녀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포괄적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 자료와 평가 도구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대부분의 학부모/보호자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지지함을 인식하면서도, 자녀에게 인간의 성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최종 책임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료 열람을 원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학교 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성 건강 교육 또는 HIV 예방 교육에 자녀가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반드시 서면 요청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법(EC) 제 51938 조에 따라 학부모는 다음 조건 하에 자녀가 포괄적 성 건강 교육, HIV 예방 교육 및 관련 평가에 전부 또는 일부 참여시키시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 및 학생 건강행동 연구에 관련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모든 인쇄 및 시청각 자료는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 학군은 교육구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a) 수업 날짜; (b) 초청 연사 또는 기관/단체 이름; (c) 관련 교육법률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교육법 제51933조 및 51934조). 만약 외부 강사나 연사가 학년도 시작 이후에 섭외된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는 해당 수업일로부터 최소 14일 전까지 우편 또는 일반적인 통지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 또는 연사 활용 여부는 학군의 재량입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관련 법률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가 포괄적 성 건강 교육 또는 HIV 예방 교육을 받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K-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 가정생활, 도덕성, 종교에 관한 학생의 개인적 신념이나 관행, 또는 학부모의 신념과 관행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는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되고 학부모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교육법 제51513조). 학교는 이 조항에 따라 K-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태도나 관행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질문이 포함된 익명의 자발적 비밀 조사 및 평가 도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 경험 설문조사'가 실시될 것임을 통보받으며, 자료를 검토하고 자녀의 참여를 서면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교육법 제51513조). '학교 경험 설문조사'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서 사용하는 익명의 자발적 비밀 조사 및 평가 도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핸드북의 해당 섹션이나 https://www.lausd.org/Page/839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학생은 종합 성 건강 교육, HIV 예방 교육, 또는 익명의 자발적 비공개 설문, 질문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자녀가 포괄적 성 건강 교육, HIV 예방 교육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과 관련된 익명의 자발적 비공개 검사, 질문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어떠한 징계, 학업상 불이익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성 건강 교육, HIV 예방 교육,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익명의 자발적 비공개 검사, 질문지,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해당 교육 또는 평가에 자녀가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교육 활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내 체육 활동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내 체육 활동부는 중학교 교내 스포츠 프로그램(Middle School Intramural Program)과 고등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학업과 체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이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내 체육 활동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내의 모든 고등학교를 포함해 대부분의 스팬 학교(span schools) 및 단일 캠퍼스 마그넷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운영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캘리포니아 교내 체육 연맹(California Interscholastic Federation) 및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내 체육 활동부에서 정한 참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년 캘리포니아 주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가 실시하는 종합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응급상황 학생 정보 양식(Student Emergency Form)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스테로이드 및 오피오이드 사용 금지 서약서, 행동 강령 서약서, 비시즌 책임 면제서, 체육 보험 증명서, 뇌진탕 정보 안내서, 심장 마비 정보 안내서, 미디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위험 경고 및 동의서(Acknowledgement of Risk Warning and Consent Form)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교육구 교내 체육 웹사이트(https://www.lausd.org/athletic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 평균 학점(GPA) 3.0 이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매 시즌 종료 시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우수 학생 운동선수로 선정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체육 연맹(CIF) 대회 및 사이드라인 치어리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대회(예선 및 훈련 포함) 참여 전에 캘리포니아 주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로부터 매년 실시하는 참가 전 신체 검사(PPE)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면허 의사(MD 또는 DO), 간호사(NP), 또는 의사 보조(PA)가 실시한 PPE 를 인정합니다. 일부 보조 부대 및 행진 밴드 멤버들은 예선, 훈련 및 참가 전 최소 한 번의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가 운동선수가 뇌진탕 또는 두부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운동선수는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의 감독 하에 최소 7 일간의 점진적인 복귀 프로토콜을 완료해야 합니다. 뇌진탕 의심 증상은 뇌진탕 관리 교육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만이 평가할 수 있으며, 치료 의료 제공자의 서면 허가와 학교 간호사의 확인 없이는 운동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보호 대상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을 이유로 어떠한 학생도 교 내외 체육 활동 또는 교육구 및 학교 주최 체육 활동에서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동등한 기회를 거부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lausd.org/Page/358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내 체육 활동 및 중학교 교내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교내 체육부(213) 241-584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상해 보험

교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의료 및 병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EC) 제 32220~32224 조]에 따라, 모든 학교 운동부원은 의료 및 병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이 보험 요건은 교육구가 의료 및 병원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기타 건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습니다.

본 핸드북의 학생 건강 보험 섹션에서 언급된 건강 보험 플랜은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활동,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는 CHAMP 헬프라인(866)742-2273 으로 연락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wellnessprograms 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상해 보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위험 관리 및 보험 부서 웹사이트(Voluntary Student Accident Program)에서 확인하거나 (213) 241-315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

모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생은 교육구 졸업 요건의 일부로 “A-G”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A-G” 요건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시스템 입학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교과 영역을 나타냅니다. 아래 표는 “A-G”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과목들과 LAUSD 의 추가 졸업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교육구의 졸업 요건은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그리고 수업 외 요구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12 학년 학생이 모든 졸업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USD 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졸업식에서 사용할 대여용 학사모, 술, 가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교육 권리 보유자는 기념용으로 학사모 및 가운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과목 (“A-G” 캘리포니아 교육부 및 LAUSD 졸업 요건)	2025~2027 년 졸업생 대상 LAUSD 졸업 요건
A. 역사/사회 과목	3 년 세계사 1 년 미국사 1 년 정부 1 학기 경제 1 학기
B. 영어	4 년
C. 수학	3 년
D. 과학	2 년 (실험 과학 - 생물학 1 년, 물리학 1 년)

E. 영어 외 언어	동일 언어 2 년
F. 시각 및 공연 예술	동일 분야 1 년
G. 대학 준비 선택 과목	1 년
체육	2 년
건강	1 학기
민족학 (2027 학년부터 적용)	1 학기
봉사 학습 ***	
진로 탐색 ***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 수: 210 학점	

*** 수업 외 요구 사항에는 봉사 학습 이수와 진로 탐색 확인이 포함됩니다.

LAUSD 는 교육구의 졸업 요건의 일부로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입학 요건에 부합하는 “A-G” 졸업 요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05 년 6 월 14 일 채택된 교육위원회 결의문은 “모든 학생은 LAUSD 에서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A-G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A-G 과정 외에도 LAUSD 는 건강, 민족학, 진로 탐색, 봉사 학습 프로젝트를 지역 졸업 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등 학교는 매년 모든 학생과 함께 개별화 졸업 계획(IGP)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양질의 엄격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선택하는 교과가 향후 진로와 인생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IGP 회의는 상담 교사, 학생, 학부모/법적 보호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학업, 개인적 성장, 진로 계획과 관련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 면제
일부 학생 그룹은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의 최소 졸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역 졸업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학생;
2. 홈리스 상황에 있는 학생;
3. 이전에 소년법원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
4. 현역 군인 가정의 학생;
5. 현재 이주 노동자 가정의 학생;
6. 신입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7. 대체 평가 옵션에 참여하도록 지정된 학생.

이 면제의 자격은 교육법(EC Sections 51225.1, 51225.2)에 명시된 특정 추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교 상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교육 옵션 학교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교육 옵션 학교는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의 개별적 필요, 관심사, 학습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유연한 시간표, 지원적인 커뮤니티 등 자녀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교육 옵션 학교는 각기 다른 운영 철학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교수 전략은 출석률을 높이고 학업 성과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들 학교는 전통적인 학교와 동일한 엄격한 학업 기준을 충족하며, 졸업 후 대학 진학과 직업 준비에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옵션 학교에는 대안학교, 독립 학습학교, 임신 및 양육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기회학교(opportunity school), 가정 병원 학교, 지역 커뮤니티 데이 학교 등이 있으며, 모든 학생에게 맞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Page/66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옵션 학교로 등록하려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자발적 전학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들은 버추얼 아카데미(Virtual Academy), 교육 옵션 학교 사무국, 전환 프로그램 사무실(Office of Transitional Programs)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213) 241-22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추얼 아카데미 (VIRTUAL ACADEMY)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버추얼 아카데미는 TK~12 학년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연성과 지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도 교사, 친구,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생의 흥미에 맞는 6 개 주제별 학교 중 선택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정오까지 자격 있는 교사가 실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는 서부학교대학협회(WASC)의 인증을 받은 학교이며, 어너 과목(Honors), AP, 학점 회복(Credit Recovery) 등의 과정을 통해 학업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버추얼 아카데미는 현장 체험학습, 평가, 졸업식 참여 등 오프라인 학습 기회도 함께 제공하여, 학생이 단절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교육구 전역에 13 개의 웰컴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가족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버추얼 아카데미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VirtualAcademy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enroll.lausd.net 에서 가능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생별로 선호 학교를 순위 지정할 수 있으나, 배정은 공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버추얼 아카데미는 버추얼 아카데미 및 교육 옵션 학교 사무실, 전환 프로그램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213) 241-2231 로 연락해 주십시오.

성인 및 직업 교육부 (DACE)

DACE 는 학습자가 대학, 직업 및 커뮤니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0 개의 주요 성인 교육 센터, 86 개 이상의 위성 사이트 및 포괄적인 성인 교육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DACE 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성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ACE 의 학업 프로그램에는 영어(ESL), 시민권 교육, 성인 기초 학력, 고등학교 졸업장 과정, 고등학교 학력 등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DACE 는 미래가 불확실한 청소년 및 성인 영어 학습자의 대학 및 직업 기회 접근을 확대합니다. ACCT 프로그램(Accelerated College and Career Transition)은 위탁 청소년 및 노숙 청소년 등 연계가 끊긴 16~24 세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맞춤형 학습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ET 프로그램(Integrated Education and Training)은 성인 영어 학습자에게 영어 수업과 직업 훈련을 동시에 제공하여 고임금, 고기술 일자리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FSI 프로그램(Family Success Initiative)은 이중언어 가정을 지원하며, 자녀의 학업 성공을 돕기 위한 학부모 대상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학업 과정 외에도, DACE 는 15 개 산업 분야에서 200 개 이상의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65 개 분야의 견습 프로그램과 35 개 독립 프로그램 후원 기관과 협력합니다. 또한 L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LA 시 경제 및 노동개발국, 다양한 지역 고용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기반 직업 훈련을 지원합니다.

성인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213) 241-3150 로 전화하거나 https://www.launifiedadult.org 를 방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기 평가 프로그램 (CSU-EAP)

조기 평가 프로그램(EAP)은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의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EAP 는 12 학년이 되기 전에 학생들의 영어 및 수학 분야의 대학 진학 준비 상태를 조기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AP 점수는 CSU 가 대학 수준의 영어 및 수학 수업 수강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최초 신입생을 적절한 일반 교양(General Education, GE) 영어 및 수학 수업에 배정할 때 활용하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모든 11 학년 학생들은 봄에 시행되는 영어 및 수학 과목의 Smarter Balanced 영어 언어 예술/문해력 및 수학 총괄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EAP 에 자동 참여하게 됩니다. EAP 결과는 CAASPP 학생 점수 보고서(SSR)에 포함됩니다. 각 Smarter Balanced 시험이 끝날 때, 학생들은 CSU 및 CCC 에 자신의 시험 결과를 제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CSU 에 결과 제공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CSU 측 요청 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CAASPP 결과 제공 여부는 대학 입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과는 CSU 입학 후 수강 과목 배정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일부 CCC 는 EAP 점수를 인정하며, 필요 시 학생은 CCC 에 점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SU/EAP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자녀의 상담교사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http://www.csustudentsucces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척도 평가(CAASPP)

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척도 평가(CAASPP)는 주 정부의 학업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CAASPP 는 매년 학생의 진척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및 직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CAASPP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5 가지 평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1. Smarter Balanced 총괄 평가: 3~8학년 및 11학년의 영어 언어 예술(ELA)과 수학;
2. 캘리포니아 대체 평가(CAA): 3~8학년 및 11학년의 ELA와 수학 (자격을 갖춘 학생 대상);
3. 캘리포니아 과학 시험 (CAST): 5학년, 8학년, 고등학교 재학 중 1회 시행;
4. 캘리포니아 대체 과학 평가(CAA): 5학년, 8학년, 고등학교 재학 중 1회 시행 (자격을 갖춘 학생 대상);
5. 캘리포니아 스페인어 평가(CSA): 3학년부터 11학년의 해당 자격을 갖춘 학생 대상.

과학 과목의 CAA 를 제외한 모든 CAASPP 평가는 봄에 시행되며, 각 평가의 결과는 해당 연도의 여름 말에 제공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부모 포털(Parent Portal)을 통해 학생의 전자 CAASPP 점수 보고서(SSR)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학부모 포털 계정을 만들지 않은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계정을 만드는 것이 권장되며, 계정 등록 방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usd.org/Page/19142.

CAASPP SSR 에는 해당 연도의 ELA 및 수학 과목에 대한 종합 점수와 성취도 수준 설명이 포함되며, 이전 2 년간의 점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매년 학교에 서면 요청을 제출하여 자녀를 CAASPP 평가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교육법(EC) 제 60615 조]. 시험 면제를 원할 경우, 주 지침에 따라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대체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Starting Smarter 웹페이지(https://ca.startingsmarter.org/) 또는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학부모 가이드(https://www.cde.ca.gov/ta/tg/ca/parentguidetounderstand.asp)를 참고하십시오.

대학 입학 요건 및 고등 교육 정보

캘리포니아주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사립 대학 등 다양한 고등 교육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 후 CSU, UC 또는 사립 대학으로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CSU 신입생 입학 요건
CSU 입학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학생의 고등학교 평균 학점(GPA)은 9 학년 이후 이수한 모든 대학 준비 과목("A-G" 과정)의 성적으로 계산됩니다.

신입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자격 취득, 15 학점의 종합적인 "A-G" 대학 준비 과정 이수,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A-G" GPA 달성:

1. 캘리포니아 거주자 및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자: A-G GPA 2.50 이상;
2.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거주자 중 GPA가 2.00 - 2.49인 경우, 추가 평가 기준 적용 가능;
3.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 3.00 이상의 "A-G" GPA를 취득하고 개별 캠퍼스에서 요구하는 추가 평가 요소를 충족하면 CSU 입학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4. 비거주자로서 A-G GPA가 2.47~2.99인 경우: 보완 요소를 기준으로 입학 평가 가능.

경쟁이 치열한 캠퍼스 및 학과는 더 높은 GPA 기준을 적용하거나 보완 요소의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G GPA 및 보완 요소의 조합을 통해 입학 자격이 결정됩니다. 추가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G 최소 요건을 초과한 과목 수;
2. 수학 및/또는 과학 과목의 GPA;
3. 가정 소득;
4. 과외 활동 및 리더십 참여;
5. 고등학교 재학 중 GEAR UP, Upward Bound, AVID 등의 대학 준비 프로그램 참여
6. 입학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든 기타 추가 정보.

UC 신입생 입학 요건

1. 캘리포니아 지원자: A-G 과목 GPA 3.0 이상/비거주자: GPA 3.4 이상;
2. 15개 A-G 과목 이수 (11과목은 11학년 말까지 완료해야 함);
3. 최소 15개의 A-G 대학 준비 과목을 C 이상 성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 중 11개 과목은 12학년 시작 전까지 완료해야 함.

SAT/ACT 시험 점수
일부 대학은 입학 시 SAT 또는 ACT 점수를 요구하지만, CSU 와 UC 시스템은 입학 결정 시 SAT/ACT 점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부 "표준화 시험 배제(test-blind)" 대학은 장학금 심사를 위해 점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지원서에 시험 점수를 제출할 경우, 최소 요건 충족 또는 수강 과목 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자료
대학 입학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1. https://www.cccco.edu/: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공식 웹사이트,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링크 제공;
2. https://www.assist.org/:커뮤니티 칼리지에서 CSU 또는 UC로 편입을 계획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목 이관 정보 제공;
3. https://www.calstate.edu/apply: CSU 시스템 정보, 온라인 지원, 각 CSU 캠퍼스 링크 제공;
4. 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 UC 시스템 입학 정보, 온라인 지원, 각 UC 캠퍼스 링크 제공;
5. https://www.lausd.org/GPS: 이 웹사이트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및 진로 준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생, 가족, 교육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단계의 대학 및 진로 준비부터 대학 진학 후 학업 지속성 강화, 그리고 고등교육 이후 준비 역량 강화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립대학은 자체 입학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진로 기술 교육(CTE)을 통해 다양한 직업 탐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수업은 직업 준비 또는 직장 생활 준비에 중점을 두며, 학업 과정과 통합되어 학업 성취를 지원합니다.

매년 개별 졸업 계획(IGP) 상담에서 학생들은 학교 카운슬러와 만나 대학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CTE 과정 등록 기회에 대해 논의합니다.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이중 등록 및 국제 바칼로레아 (IB) 과정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7~1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중 등록(Dual Enrollment) 및 IB 과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lausd.org/Page/1416#spn-content.

차별 금지 선언문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차별, 괴롭힘, 위협, 학대적 행위 및/또는 집단 괴롭힘이 없는 근무 및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구는 실제 또는 인종/민족, 성별/성(성 정체성, 성 표현, 임신, 출산, 수유 상태 및 관련 의학적 상태 포함), 성적 지향, 종교, 피부색, 국적(언어 사용 제한 및 차량법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소지 포함), 혈통, 이민자 신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우울증 및 조울증,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 간염, 간질,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심장 질환 포함], 의학적 상태(암 관련 및 유전적 특성), 군복무 및 재향군인 신분, 혼인 여부, 등록된 동거 파트너 여부, 연령(40 세 이상), 유전 정보, 정치적 신념 또는 소속(노조 관련 제외),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 또는 연방, 주, 지방 법률, 조례 또는 규정으로 보호되는 기타 모든 요소를 근거로 한 차별, 괴롭힘, 위협, 학대적 행위 및/또는 집단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이는 교육구가 운영하거나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 보이 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 또는 법률 또는 규정으로 보호되는 기타 모든 요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고용에서 적용됩니다.

차별이란 정당한 비차별적 사유 없이 보호되는 특성을 근거로 교육 프로그램, 업무 또는 활동 내에서 개인이 제공받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 또는 불리한 고용 조치를 포함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의 괴롭힘은 대상자가 보호되는 특성에 근거하여 원하지 않는 행위를 당하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쾌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보호 대상 특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에게도 불쾌할 것이며, 그 행위가 충분히 심각하거나 지속적이며 광범위하여 개인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기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괴롭힘은 말로 하는 발언이나 조롱, 시각적 또는 문서 형태의 표현, 위협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형태의 행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호 대상 범주에 근거한 괴롭힘은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이며, 교육구는 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해당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은 실제 또는 인지된 보호 특성을 근거로 한 차별, 괴롭힘, 위협, 학대적 행위 또는 집단 괴롭힘을 목격한 경우, 안전한 상황에서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학교/사무실이 직원, 학생 또는 제 3 자에 의한 그러한 행위를 알게 되거나 알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건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행위를 종식시키고, 적대적 환경이 조성된 경우 이를 제거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학교/사무실에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취해져야 합니다. 불만 제기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교육구는 불만 제기, 항소, 위반 사례 보고, 차별, 괴롭힘, 협박, 학대 행위, 집단 괴롭힘 신고 또는 불만 제기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이 차별 금지 정책은 교육감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학교/사무실에서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를 제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혐오 동기 사건/범죄의 다른 형태를 금지하는 추가 정보는 모든 학교 및 사무실에 비치된 교육구의 기타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모든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검토되어 교육 서비스 및 기회 제공 시 불법적 차별로부터 최고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에 열거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을 근거로 한 학생에 대한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정보, 지원 또는 불만 제기(통합 민원 절차 참조)를 원하시면 학교 관리자, 학교 타이틀 IX/괴롭힘 불만 관리자, 학생 민권 사무소의 교육구 섹션 504 및 타이틀 IX 조정자(213-241-7682) 또는 https://www.lausd.org/page/3494, 또는 EquityCompliance@lausd.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타이틀 II/ADA 준수 관리자, ADA 준수 사무소(213-241-4530) 또는 https://www.lausd.org/ADA, 또는 ADA-info@lausd.net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LAUSD.org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및 이메일 접속을 제공합니다. 교육구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lausd.org 입니다. LAUSD 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사용은 모두 LAUSD 책임 있는 사용 정책(Responsible Use Policy, RUP)에 따라 규제되며, 정책 전문은 ITS home/RUP (lausd.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SD.org 를 통한 인터넷 접속과 LAUSD 네트워크 자원(이메일 계정 포함)의 사용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부적절한 사용 시 해당 특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학생 식별 번호를 가진 재학생, LAUSD 소속 교직원, LAUSD 가 고용한 계약자는 무료로 LAUSD.org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및 네트워크 자원의 제공 목적은 교육 활동, 업무 활동 또는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LAUSD.org 이메일 계정을 받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소속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연결된 원격 위치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학생 사용자들은 반드시 학교에 학생 서명 및 학부모 동의서(Student Signature and Parental Release Form)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보안을 위해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도록 권장되며, 비밀번호는 항상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연방법인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을 준수합니다. CIPA 는 교육구가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기술적으로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A) 외설적인 콘텐츠, (B) 아동 포르노, (C)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 **이러한 기술을 우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단 기술이 100% 완벽하지 않으므로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학교는 21 세기 아동 보호법에 따라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역시 자녀가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학생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학부모/법적 보호자도 자녀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학생 모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cybersafety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음악, 사진, 동영상,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반드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정책 및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앱 다운로드 시에도 적절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다운로드는 반드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관련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적 목적의 다운로드는 특히 저작권 보호 자료의 경우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징계 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모든 출처를 올바르게 인용해야 하며, 인공지능(AI)을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AUSD.org 사용자에게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권이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계정 감사 및 로그 기록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공공 네트워크이므로 이메일 및 기타 통신 내용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LAUSD.org 의 시스템 운영자는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 데이터, 이메일, 웹페이지 및 서버에 저장된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목표, 정책, 교육적 사명과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며, 지역, 주,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면 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계정 사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사용자명 또는 이메일을 삭제, 복사, 수정, 위조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용자를 사칭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용자들은 LAUSD.org 접속을 통해 인종, 종교, 신조, 피부색, 국적, 혈통, 신체적 장애, 성별, 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주를 근거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경멸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네트워크와 전자 통신 기술(인터넷 및 이메일 포함)은 타인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메일이나 기타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 의견은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책임 있는 사용 정책(RUP)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 권한이 박탈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징계 또는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방과 전후 프로그램 이용 안내

비욘드 더 벨(Beyond the Bell, BTB) 부서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방과 전후 프로그램 및 확장 학습 기회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마다 다르며, 아래는 간략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13) 241-7900 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s://btb.lausd.org/ 를 방문해 주십시오.

1. 방과 전후 프로그램 – BTB는 학군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인 Ready, Set, Go (등교 전 프로그램), LA's BEST (등하교 후 프로그램),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방과 후), YS 플러스 (등/하교 후)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력하여 TK~12학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을 받은 지도 인력의 관리 아래, 학생들에게 학업 지원, 창의적 체험, 체육 및 놀이 활동을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BTB는 이 외에도 멘토링, 시각/공연예술, 다양한 체험형 활동을 제공하는 여러 협력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서비스(YS)' 프로그램은 초등(2-5/6학년)과 중학교(6-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교 후 오후 6시까지 창의 체험 및 스포츠 활동을 제공합니다;
2.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업 부진 학생들을 위해 정규 수업 시간 외 추가 학습 지원을 실시합니다. BTB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 학습 기회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여름방학 학점 회복 프로그램, 학술 경시 대회 (Academic Decathlon and Pentathlon), 음악 교육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과학 교육 기준을 반영한 야외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Clear Creek 및 Point Fermin 야외 센터에서 진행), 기타 예산 지원이 가능한 특별 프로그램.

이민 신분, 시민권,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는 교육 평등 보장

모든 아동은 이민 신분, 시민권, 종교와 상관없이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비상연락처(보호자 체포/추방 시 대리양육자 정보 포함)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양육자 권한 증명서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아동의 교육/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인종, 민족,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 증오범죄를 신고하거나 교육구에 공식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불만 제기 절차는 '통합 민원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s)'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학생과 가족을 위한 이민자 권리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웹사이트: http://www.oag.ca.gov/immigrant 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위 아 원(We Are One)" 웹사이트: https://www.lausd.org/weareone .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른 공지사항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적격 개인이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접근하는 데 있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1990 년 미국 장애인법 Title II 에 따름).

정책 및 절차 조정: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과 참여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 수정을 실시합니다(예: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이 금지된 장소에서 보조동물 동반 허용).

효율적인 의사소통: 청각, 시각,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서비스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를 위한 조정 요청은 가능한 한 빨리, 행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72 시간 이전에 해당 학교 교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통역 서비스 요청은 전국적으로 인증 통역사의 수가 부족하므로, 행사 예정일 최소 10 근무일 전에 요청해 주십시오. 행사 장소가 LAUSD 학교나 사무실 외부인 경우, 최소 5 근무일 전까지 ADA 준수 관리자에게 이메일(ADA-Info@LAUSD.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조 기기, 서비스 또는 정책 조정을 제공하는 데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ADA 는 교육구가 프로그램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LAUSD 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DA 준수 관리자에게 다음으로 공식불만을 제기해 주십시오: 이메일: ADA-Info@LAUSD.net ,전화: (213) 241-4530, 자세한 정보: https://www.lausd.org/ADA .

장애 학생 및 특수교육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식별하고, 찾고, 평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며, 대상에는 전학이 잦은 학생,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 홈리스 상황의 학생, 위탁 보호 체계에 있는 학생, 그리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LAUSD 관할 구역 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그 외의 모든 학생은 LAUSD 통학 구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hild Find 웹사이트: https://www.lausd.org/spedchildfind 를 참고하십시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령기 자녀의 부모/법적 보호자는 거주 지역의 공립학교 행정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아직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장애가 의심된다면 조기특수교육(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부서 (213) 241-4713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https://www.lausd.org/spedchildfind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는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가 참여하는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을 통해 결정됩니다. 교육구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시하며,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IEP 팀은 학생이 장애가 없다고 가정할 때 배정될 학교와 학급 내에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가능한 한 일반교육 환경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이 원칙이며, IEP 팀은 일반교육 학급에서 모든 보조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 학생의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도로 인해 보조 수단과 서비스만으로 일반학급에서의 교육이 충족될 수 없을 때만 별도의 환경이나 학급 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절차 및 학생과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권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 장애인 교육법(IDEA)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특수교육 서비스 안내서(절차적 권리와 보호 조치 포함)' 소책자는 각 학교 및 LAUSD 특수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lausd.org/sped 에서 다양한 언어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문의 사항을 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교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먼저 문의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특수교육과 관련된 질문은 LAUSD 특수교육부 가족지원팀(School and Family Support Services) (213) 241-6701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1973 년재활법 제 504 조(Section 504)에 따른 장애 학생

1973 년 제정된 연방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제 504 조(Section 504)는 연방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권법입니다.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괴롭힘, 위협, 집단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으며 교육구는 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이 아니지만 연방법상 장애 정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섹션 504 계획(Section 504 Plan)을 통해 일반교육 수업에 접근하기 위한 편의 조치, 보조 수단,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섹션 504 에 따라 장애 학생이 학업 외 활동과 방과 후 활동에서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평가, 식별, 교육 배정과 관련된 결정 및 이에 대한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참여 및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섹션 504 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이의 제기, 불만 제기(통합 민원 절차 참조), 비공개 중재 또는 공정한 청문 요청은 교육구 섹션 504 담당자에게 (213) 241-7682, 이메일 :Equitycompliance@lausd.net 또는 학생민권사무소 웹사이트 (https://www.lausd.org/page/3494)로 문의하십시오.

일시적 장애 학생

주 법률에 따라 비전염성 일시적 의학적 장애로 인해 정규 주간 수업 또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제한된 기간 동안 출석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 K-1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의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는 일시적 장애 기간 동안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병원 교사는 가능한 최대한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과 연관된 과목/과정에 대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가정/병원 교육은 일시적인 중간 서비스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정규로 요구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병원에서의 교육은 다음 조건 하에 시작됩니다: (1) 주치의가 학생의 참여 능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시작을 승인한 경우, 그리고 (2)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교육 임시 전환에 동의한 경우. IEP 를 보유한 학생이나 504 계획에 따라 지원받는 학생도 특정 조건 하에서 가정/병원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타이틀 IX) 및 학생 권리

연방법, 주법, 제 9 조(타이틀 IX) 및 교육구 정책에 따라,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혼인 여부, 양육 여부, 임신, 출산, 수유, 유산, 임신 종료 또는 관련 의료 상태 등에 기반하거나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개인/집단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학생이 교육 활동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교육구의 모든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에서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체육 활동;
2. 체육 수업;
3. 수강 과목 및 수업 내용;
4.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대우 방식;
5.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
6. 참여 가능한 과외 활동, 프로그램 및 클럽;
7. 영예, 특별상, 장학금, 졸업 관련 행사;
8. 기금 마련 활동.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이나 괴롭힘 없는 환경에서 교육구 학교나 프로그램에 다닐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구는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이 배제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유/모유 수유, 출석, 학업 관련 지원을 포함한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성별을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정서적으로 가능한 경우 교육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임신한 미성년자 전용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임신 관련 상황이 다른 일시적 장애와 동일하게 처리될 권리, 의사의 판단에 따라 8 주 이상의 육아 휴직을 자발적으로 취할 권리,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학업이나 과제를 요구받지 않을 권리, 복학 시 기존 수업을 계속 수강하거나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 휴학 중 놓친 학업을 보충할 권리,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등학교 5 학년 수업을 수강할 권리, 그리고 위와 같은 지원을 사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권리 알아보기: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Know Your Rights: Pregnant and Parenting Students)" 자료와 연방법 및 교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usd.org/page/3494 .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 관리자, 타이틀 IX/괴롭힘 민원 관리자, 심리 상담사, 카운슬러 또는 믿을 수 있는 교직원에게 연락하거나 공식 불만 제기(통합 민원 절차 참조)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가능한 경우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타이틀 IX 위반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 또는 도움은 학교 관리자, 학교의 타이틀 IX/괴롭힘 민원 관리자 또는 교육구 학생 민권 사무소의 타이틀 IX 담당자 Binh Nguyen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13) 241-7682 이메일: EquityCompliance@lausd.net 주소: 333 S. Beaudry Avenue, 18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타이틀 IX 및 학생의 권리, 보호, 불만 처리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www.lausd.org/page/3494 내 타이틀 IX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정책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성희롱이 없는 근무 및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적 지향, 성, 성 정체성, 성 표현, 임신, 출산, 수유/모유 수유 상태 및 관련된 의료 조건을 이유로 직원, 학생, 또는 교육구와 거래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주 및 연방법 위반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을 기반으로 한 원치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그 외 성적 언어, 시각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는 교육 또는 근무 환경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1.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가 개인의 고용, 학업적 지위 또는 성취 조건으로 명시적/암묵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2.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이 고용 또는 학업 관련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
3.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가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서비스, 영예, 프로그램 또는 활동 관련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4. 해당 행위가 개인의 업무 또는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협적이고 불쾌하며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1972 년 교육개정법 제 9 조(타이틀 IX)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성 기반 행위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교육구 직원, 대리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혜택,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대가성 성희롱”);
2. 주관적,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줄 정도로 지속적이고 심각하여,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 또는 수혜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성적 기반 행위 (“적대적 환경 성희롱”);
3. 성폭행(연방수사국 강제 또는 비강제적 성범죄 포함),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학교 직원은 차별, 성희롱, 괴롭힘, 학대 행위 또는 집단 괴롭힘을 목격할 경우, 안전한 상황 하에서 즉각 개입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관리자나 타이틀 IX/괴롭힘 민원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 개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사무실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 인지하거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 행위 주체가 직원, 학생 또는 제 3 자 누구든지 관계없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고, 문제를 종결하며 적대적 환경이 조성된 경우 이를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나 조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원 조치는 제공됩니다. 본 정책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감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학교 활동 또는 출석 관련 행위에 적용됩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해당 행위를 목격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모든 직원 또는 학생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관리자 또는 타이틀 IX/괴롭힘 민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성희롱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민원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For assistance with employee concerns, contact the Equal Opportunity Section at (213) 241-7685.
학생 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우려 사항에 대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관리자, 학교 타이틀 IX/괴롭힘 민원 관리자, 또는 교육구 학생 민권 사무소의 타이틀 IX 담당자 Binh Nguyen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13) 241-7682 이메일: Equitycompliance@lausd.net 웹사이트: https://www.lausd.org/page/3494.직원 관련 문의는 기회평등부서(Equal Opportunity Section) (213) 241-76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학생 지원

맥키니-벤토 홈리스 아동 청소년 지원 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모든 학령기 아동은 주거가 안정된 학생들과 동일한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숙자 학생은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으로 정의되며, 다음 중 한 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또는 임시 보호소;
2. 사람의 수면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지, 자동차, 차고 등;
3. 주거 상실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가족의 집이나 아파트에 거주(이중 거주);
4.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하는 경우;
5. 임시로 트레일러, 레저용 차량(RV), 모터 홈 또는 캠핑장에 거주하는 경우;
6. 부모/법적 보호자가 아닌 성인과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비동반 노숙자 청소년).

학생 주거 설문지(Student Housing Questionnaire, SHQ)는 매 학년도 초 모든 학교에서 기타 필수 등록/입학 서류와 함께 배포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비동반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이 설문을 통해 현재의 거주 상황을 자발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지정된 노숙자 학생 담당 교직원이 있어야 하며, 학년 중 언제든지 학교 또는 노숙자 학생 지원 사무실(213-202-7581)에 직접 SHQ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10 개 언어로 제공되며 https://www.lausd.org/he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숙 상황에 있는 학생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하며, 학업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등록 보호 조치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기존 학교를 계속 다닐 권리와, 해당되는 경우 관할 구역을 벗어났더라도 기존 중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기존 학교란, 학생이 마지막으로 재학했던 학교 또는 지난 15 개월 내 다녔던 학교 중 학생과 연관이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비동반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구는 기존 학교로부터의 통학을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는 노숙 상황에 있는 학생을 즉시 등록해야 하며, 예방접종 기록, IEP, 504 계획, 성적표 등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등록 학교는 필요한 모든 기록을 이전 학교에 요청하고, 학부모/보호자 및 비동반 청소년을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지역 사회 단체, 특수교육, 학습 지원, 유아 교육, 방과 전후 활동 프로그램 등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택 또는 등록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학생을 요청한 학교에 즉시 등록시켜야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쟁 해결 절차는 노숙자 학생 지원 사무실(213-202-7581)로 문의하십시오.

교육구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2 학년 이후에 학교를 전학한 노숙자 학생에게는 지역 졸업 요건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정된 학교 직원은 해당 학생과 그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주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 외에 교육구에서 채택한 교육과정 및 기타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교육법(EC) 제 51225.1 조]. 노숙 상황에 있는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부분 또는 전 과목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법 51225.2 조]. 해당 학생이 선택적 행위로 인해 퇴학 심의에 회부되는 경우 교육구 노숙자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IEP 회의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법 48918.1 조].

위탁 보호(foster care)를 받고 있는 학생

아동 및 가족 복지국(DCFS) 또는 보호관찰국(특정 상황에서)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면허가 있는 위탁 가정,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STRTP, 이전의 그룹 홈), 친척과 함께 거주하거나 생물학적 부모와 거주하는 학생은 학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권리와 등록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DCFS 자발적 위탁 협약(Voluntary Placement Agreement)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위탁 보호 학생 정의에 포함됩니다 [교육법 42238.01 조].

위탁 보호 학생은 학교 기록, 예방접종 기록, 교복, 또는 이전 학교의 벌금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학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교육자, 학교 직원,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보호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은 위탁 보호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교육법 48853.5 조].

위탁 보호 학생은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권리가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관할 구역이 달라지더라도 같은 학군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위탁 보호 학생이 속한 교육구는 해당 학생이 법원의 관할이 유지되는 동안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의 관할이 학년도 중 종료되더라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는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어야 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기존 학교에 다닐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교육법 48853.5 조].

학교 선택 또는 등록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학생이 등록을 희망하는 학교에 즉시 등록시켜야 하며,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 및 출석 서비스(Student Support and Attendance Services) (213) 241-384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보호 학생은 지역 졸업 요건 면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 직원은 학생과 그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주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 외에 교육구에서 채택한 교육과정 및 기타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 면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이 위탁 보호 대상자여야 합니다;
2.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전학했어야 합니다;
3. 4년 내에 LAUSD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4. 교육권을 가진 사람이 해당 면제가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5. 학생은 캘리포니아 주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한 번 면제 자격을 얻으면, 위탁 보호 사례가 종료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더라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학교, 학생, 교육권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지역 요건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육법 51225.1 조].

학부모/법적 보호자, 위탁 보호자, 사회복지사 및/또는 보호관찰관은 학생의 학교 전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구에 알려 (해당되는 경우) 부분 학점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기록이 적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교육권리 보유자와 함께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이 원래 학교에 계속 다닐지 여부와 통학 수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탁 보호 학생에게 정학(교내 정학 포함) 처분이 내려지거나 퇴학이 추천된 경우, 징계 관련 회의(징계 연관성 판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대체 학교로 비자발적 전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관계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교육권자, 미성년자 법률 대리인, DCFS 사회복지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부족(tribal) 사회복지사.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 및 출석 서비스(Student Support and Attendance Services) (213) 241-3840 으로 문의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Page/16356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법 제도에 연루된 학생

청소년 사법 제도와 연루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립학교 등록이나 재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립학교 학군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LACOE)은 학생이 공립학교, 청소년 법원 학교, 또는 비 공립학교에 재학 중에 만족스럽게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학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사법 시설이나 기타 법원 명령 배치에서 돌아오는 학생은 다른 모든 학생과 동일하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즉시 학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48645.5(b), 51225.2].

LA 통합교육구, LA 카운티 교육청(LACOE), LA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공동 전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협력 체계를 통해 소년 법원 학교에서 교육구로 복귀하는 학생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적절한 학교 배정 및 필요 시 사례 관리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체계는 교육 기록의 즉시 이전, 학점 산정 및 인정의 통일된 시스템, 그리고 즉각적인 학교 등록을 포함합니다 [교육법 48645.5, 49069.5, 48647, 48648].

또한 교육구 정책에 따라, 소년 사법 제도에 연루된 학생 중 위탁 보호 대상자 또는 이전에 소년 법원 학교에 다녔던 학생으로, 고등학교 2 학년 이후 전학했으며 4 년 내 졸업이 어려운 경우, 교육구의 지역 졸업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교직원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지역 졸업 요건 외에 주 차원의 졸업 요건만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면제 자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면제 자격을 한 번 부여받은 학생은 위탁 보호 또는 보호관찰 사례가 종료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더라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학생을 지역 요건 면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전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육법 51225.1]. 법에 따라, 소년 사법 제도에 연루된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부분 또는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민원 절차 (UCP)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및 연방법과 규정을 준수할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학군은 차별, 괴롭힘, 위협, 집단 괴롭힘 등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위반이나, 학군이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한 민원을 조사합니다.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5 제 4600-4695 조 및 교육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UCP 절차에 참여한데 대한 보복 및/또는 그러한 민원에 관한 교육구 결정에 대한 항소를 포함하여 지역 수준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UCP 민원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5 제 4600-4695 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통합 민원 절차(UCP)는 다음 영역에서의 법규 미 준수 혐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성인 교육(교육법 제8500-8538조, 제52334.7조, 제52500-52617조);
2. 방과 후 교육 및 안전(교육법 제8482-8484.65조);
3. 농업 직업 기술 교육(교육법 제52460-52462조);
4. 보상 교육(교육법 제54400조);
5. 통합 카테고리 보조 프로그램[34 연방규정집 제299.10-12조, 교육법 제64000(a)조];
6. 이주 아동 교육(교육법 제54440-54445조);
7. 직업 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교육법 제52300-52462조);
8. 보육 및 유아발달 프로그램(교육법 제8200-8498조);
9.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20 U.S.C. 6301 등, 교육법 52059조);
10. 차별, 괴롭힘, 위협, 집단 괴롭힘: 교육법 200, 220조 및 정부 법 11135조에 명시된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형법 422.55조에 명시된 특성 포함) 또는 해당 특성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괴롭힘, 위협, 집단 괴롭힘(교육구 내 교직원-학생, 학생-학생, 학생-교직원, 제3자-학생, 교직원-제3자 간 포함);
11. 임신 및 육아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수유 학생 포함)(교육법 제46015조, 제222조);
12. 지역 직업 교육 센터 및 프로그램(교육법 제52300-52334.7조);
13. 학생 성취도를 위한 학교 계획(교육법 제64001조);
14. 학교 운영위원회(교육법 제65000조);
15. 학교 안전 계획(교육법 제32280-32289조)
16. 주립 유치원(교육법 제8235-8239.1조);
17. 면허가 면제된 교육구(LEA) 내 주립 유치원 건강 및 안전 문제(교육법 제8235.5조);
18. 주 교육감 또는 지정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교육 프로그램.
    - 학생 수수료 부과 관련 위반: 학생은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재료, 장비 등에 대해 학생 수수료를 요구받지 않아야 하며, 이는 교육법 49011조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수수료 관련 민원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원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우선 학교장 또는 교육청장(또는 그 지정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전액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원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한 모든 학생 및 학부모/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 지역 통제 및 책무 계획(LCAP) 관련 법적 요건 미 이행: 교육구가 LCAP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UCP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육법 52075조). LCAP 요건은 교육법 52060-5207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체육 교과과정 미 이행: 현행법상 학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체육을 포함한 필수 교과과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위탁 보호 학생, 홈리스 학생, 전 청소년 법원 학교 학생, 군인 자녀, 이주 학생,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학생의 교육권 보장 미 이행: 즉시 등록, 원적 학교 유지, 지역 학교 등록, 부분 학점 인정, 주 졸업 요건 충족, 학업 자원 및 방과 후 활동 접근권 등과 관련된 요건 미이행에 대해 UCP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조);
    - 교육 내용이 없는 과목 배정 또는 이미 이수한 과목 재 배정 관련 위반: 2016-17 학년도부터 교육구는 9~12학년 학생에게 교육적 내용이 없는 수업을 배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한 학기 동안 1주일 이상 교육적 내용이 없는 수업에 등록되어서는 안 되며, 캘리포니아 주립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요건 또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성적을 받은 수업을 특별한 조건 없이 다시 수강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원은 학생 수수료 또는 지역 통제와 책무 계획(LCAP) 관련 민원을 포함해 비 준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경우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학생 수수료를 납부한 모든 학생 및 학부모/법적 보호자를 파악하고 전액 환불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과 합리적인 절차를 기울입니다. 민원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 내용이 없는 수업 기간, 수유 학생에 대한 합리적 편의 조치 제공, 위탁 보호 학생, 홈리스 학생, 현재 등록된 전 소년 법원 학생 및 군 복무 가정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구제 조치가 제공되며, 학생 수업료, 체육 교육, 수업 시간, LCAP 관련 사안에서는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 및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구제 조치가 제공됩니다.

민원 담당자: 학생 민권 사무소(Office of Student Civil Rights) 국장이 교육구의 통합 민원 절차(UCP) 담당자로 지정되어, UCP 에 따른 민원의 접수 및 조사 지휘, 민원 및 관련 조치의 기록 유지, 법률 준수를 책임집니다. 추가 정보는 학생 민권 사무소(213-241-7682) 또는 EquityCompliance@lausd.net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 교육구는 매년 학생, 학부모/법적 보호자, 교직원, 교육구 자문 위원회, 관련 사립학교 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UCP 절차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서면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5 제 4691 조에 따라, 면허가 면제된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 교실에는「보건 및 안전법 (HSC)」제 1596.7925 조에 따른 건강 및 안전 요건에 대한 공지가 비치되어야 하며, 건강 및 안전 관련 결함은 UCP 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 및 안전법 제 1596.7925 조; 교육법 제 8235.5 조). 면허가 있는 아동 발달 프로그램 시설의 건강 및 안전 관련 민원은 사회복지부에 문의하십시오. UCP 양식은 모든 학교, 지역 사무소 또는 학생 민권 사무소(213-241-7682 또는 EquityCompliance@lausd.net , 또는 https://www.lausd.org/oscr 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UCP 정책 및 민원 절차 사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UCP 민원 제기: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방 또는 주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한 서면 민원은 교육구 학생 민권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예외사항은 제외됩니다. 민원은 위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민원을 준비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은 교육구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최대한 민원인의 신원을 보호하며, 보복을 금지합니다. 민원 대상이 본 정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학생 시민권리국에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조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UCP 양식은 모든 학교나 지역 사무소, 또는 학생 민권 사무소(213-241-7682, EquityCompliance@lausd.net , https://www.lausd.org/oscr 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정책 및 절차 문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민원인은 민사상의 구제책(금지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을 포함하여 차별, 괴롭힘, 위협, 집단 괴롭힘 관련 주 및 연방법에 따른 기타 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습니다 [교육법 제 262.3 조].

교육구 결정에 대한 항소: 민원인은 교육구(LEA)의 UCP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해당 보고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요청 시, 민원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1. 교육구가 자체 민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조사보고서에 법적 결론 도출에 필요한 주요 사실이 누락된 경우;
3. 조사보고서의 주요 사실이 실질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4. 조사보고서의 법적 결론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5.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시정 조치가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항소 시 (1) 교육구에 제출한 원본 민원서, (2) 교육구 조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추가 연락처 및 프로그램, 서비스, 항소 사무소 정보는 https://www.cde.ca.gov/re/cp/uc/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립 유치원 건강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결함은 UCP 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HSC 1596.7925 조; 교육법 8235.5 조). 그 외, 아동 발달 프로그램 허가 시설의 건강 및 안전 관련 민원은 사회복지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재, 긴급 또는 위험한 시설 상태, 교사 공석 또는 부적절한 배정과 관련된 민원 제기 절차는 *윌리엄스 통합 민원 절차(Williams Uniform Complaints Proces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스 통합 민원 절차 (Williams UCP)

윌리엄스 통합 민원 절차는 다음 영역에 대한 민원 권리와 관련하여 학부모/법적 보호자, 학생, 교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교육법 제 35186 조):

1. 학습 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교과서 또는 수업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사용하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교과서 또는 수업 자료(또는 둘 다)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학교 시설은 청결하고, 안전하며, 양호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학생 화장실은 충분한 수가 개방되어 있고, 청결하며,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완전히 작동해야 합니다;
3. 교사 공석이나 부적절한 배정이 없어야 합니다. 각 학급에는 교사가 배정되어야 하며, 대체 교사나 임시 교사가 연속적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해당 과목을 가르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영어 학습자 지도 자격증도 필요 시 갖추어야 합니다.

민원은 윌리엄스 통합 민원 처리 절차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면 민원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려면 다음을 통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 본관 사무실;
2. 학생 민권 사무소(213-241-7682);
3. 이메일: WilliamsComplaint@lausd.net;
4. 웹사이트: https://www.lausd.org/oscr.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작성한 민원 양식은 다음 중 한 곳에 제출하시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 현장(본관 사무실, 교장);
2. 관할 지역 사무소;
3. 학생 민권 사무소 팩스: (213) 241-3312;
4. 이메일: WilliamsComplaint@lausd.net;

5. 우편: Los Angeles Unified – Office of Student Civil Rights, Williams Complaints, 333 South Beaudry Ave., 18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교과서 부족 문제(여러 학생이 관련된 체계적 문제)에 대한 민원은 다음 주소로 주 교육감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1430 N. Street, Suite 5602, Sacramento, CA 95814.

민원 해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은 교육구 이사회 정기 회의에서 민원 내용을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시설의 긴급 또는 위급한 상태로 인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할 권리는 없습니다. 윌리엄스 UCP 절차에 대한 질문은 학생 민권 사무소(213-241-7682) 또는 https://www.lausd.org/oscr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웰빙

웰빙 정책 기본 계획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이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아이들은 교육받기 위해 건강해야 하며, 건강해지기 위해 교육받아야 합니다.

웰빙 정책 기본계획(Blueprint for Wellness Policy)'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웰빙 정책이자 종합적인 건강 및 웰빙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웰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양 서비스, 체육 교육, 건강 교육, 건강 서비스, 긍정적인 출석률, 회복탄력성 증진, 안전한 환경 조성, 교직원 웰빙,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이 웰빙 정책은 학생, 학부모/법적 보호자,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자료는 lausd.org/wellnessprograms 또는 (213) 241-3850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정보

심각하거나 장기적인 질병, 부상, 수술 또는 입원(정신과, 약물, 알코올 치료 포함) 후 학교에 복귀하는 학생은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의 학교 출석 허가서(신체 활동 관련 권고사항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의사(MD), 정골의학 의사(DO), 치과의사, 간호사(NP),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사(PA)로 정의됩니다.

봉합(실밥, 스테이플), 에이스 밴드(탄력 붕대, 팔걸이), 깁스, 부목, 목발, 지팡이, 워커, 무릎 워커/스쿠터,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은, 신체 활동, 이동성, 안전에 관한 권고사항 및/또는 제한 사항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의 서면 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보조기구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정규 또는 수정된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최대 10 주까지 체육 수업 면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면 요청은 최대 5 일 동안 인정되며,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법(EC) 제 46010.1 조에 따라, 학교는 만 12 세 이상의 학생이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비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 체육 시간 등 야외 활동 시 보호 장비(모자, 썬 바이저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5183.5 조에 따라 자외선 차단 의류/모자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야외 활동 시 자외선 및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과 립밤(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LACDPH)은 주기적으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은 재입학 지침을 충족할 때까지 학교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출석 제한 및 복학 지침은 교육구, 캘리포니아 보건국, 캘리포니아 교육부, LACDPH 의 정책을 따릅니다. 감염병 대응 지침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국가 기관에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제한은 질병, 전염성, 교육구/카운티/주 정책에 따라 즉시 또는 학업일 종료 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지침은 https://www.lausd.org/Page/12655 의 학교 내 감염병 참고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복귀는 상태와 적절한 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 필수 예방접종을 일부 또는 모두 받지 않은 학생은 더 긴 출석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열(섭씨 38 도/화씨 100.4 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은 해열제 없이 최소 24 시간 동안 열이 없어야 하며, 증상이 호전된 후에만 학교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두, 머릿니, COVID-19 등 학생에게 위험이 되는 감염병 노출에 대해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공중보건 당국이 통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정 감염병이 학생에게 특별한 위험이 될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거나, 암 또는 장기 이식 치료를 위해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학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학교에서 제 1 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법적 보호자, 교직원, 의료 제공자, 행정 담당자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와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학생은 학교 시간 중 혈당 측정, 저혈당 치료, 케톤 검사, 탄수화물 수치 측정, 인슐린 투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 계획을 시작하려면 학교의 자격을 갖춘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제 2 형 당뇨병 관련 안내문은 현재 재학 중이거나 새로 입학하는 7 학년 학생 모두에게 입학 시 또는 공통 수업 시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법(EC) 4452.7 조].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안내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e.ca.gov/ls/he/hn/type2diabetes.asp .

예방접종 요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등록 시 보건의 또는 보건국에서 발급한 최신의 완전한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해야만 등록 및 입학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백신 접종이 아직 예정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입학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보호 학생, 노숙자 학생, 이주 노동자 자녀, 현역 군인 가족의 자녀, 개별교육계획(IEP)이 있는 학생의 경우, 예방접종 기록의 유무나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 입학이 허용되며 즉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요건은 IEP 에 따라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나 전학 오는 학생은 현재 요구되는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7 학년에 입학하거나 진급하는 모든 학생은 7 세 생일 이후에 백일해(Tdap) 백신을 추가 접종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Td 백신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7 세 생일 이후에 접종된 DTap/DTP 백신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모든 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그리고 7 학년에 입학 또는 진급할 때 수두(Varicella) 백신 2 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의 의료 제공자를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학교 예방접종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usd.org/Page/1311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로 입학한 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은 학교에서 최소 30 일마다 검토하여, 남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면제를 받을 때까지 관리해야 합니다(17 CCR, 6035(b)조).

주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이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공중보건부의 재량에 따라 학교 출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의사(MD) 또는 정골의학 의사(DO)만이 의학적 사유로 학생의 일부 또는 전체 예방접종 면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1 월 1 일부터 학교 및 보육시설의 모든 신규 의학적 면제는 캘리포니아 예방접종 등록-의학적 면제(CAIR-ME)를 통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와 의사는 언제든지 CAIR-ME 에 등록하고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CAIR-ME 에 로그인하여 의학적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면제 요청 번호를 자녀의 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는 CAIR-ME 에 로그인하여 면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발급되면, 의사는 2 페이지로 된 양식을 출력하여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해당 서류를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는 CAIR-ME 시스템에서 의학적 면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의사가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신체적 상태 또는 의학적 사유의 구체적 내용;
2. 면제되는 각 필수 백신의 명칭;
3. 의학적 면제가 영구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
4. 일시적 면제의 경우, 서명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의 만료일.

학교 보건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 기반 클리닉에서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생 의료 서비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usd.org/sms . 자세한 정보 또는 예약을 원하시면 (213) 202-7590 으로 전화하십시오.

학교 내 약 복용
정규 수업 시간 중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 복용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학교 간호사 또는 지정된 학교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법 제 49423 조]:
1. 캘리포니아 주에서 약 처방이 가능한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제공자가 작성한 "학교 시간 중 복용할 약물 요청서"로, 약물의 이름, 복용 방법, 복용량, 복용 시간표를 포함한 문서;
2. 멕시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선불 이중국적 건강 플랜과 계약된 의사 또는 외과의가 작성한 흡입용 천식 약물의 소지 및 자가 투여 관련 서면 허가서. 이 서면 허가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 또는 외과의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제49423.1조];
3.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교육권자인 "보호자"가 학교에 해당 학생에게 의료제공자의 지시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다는 서면 진술서;
4. 가능한 경우, 의료제공자는 학생이 수업 시간 중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약물 복용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장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의료제공자에게 이와 같은 일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면 동의서는 처방 내용이나 의료 제공자가 변경될 경우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의료 제공자 서명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6.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약물 복용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 제공자의 서면 동의와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7.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언제든지 학교에서의 약물 투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원할 경우, 학부모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교 간호사가 의료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이 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족법 제 6925 조 참조). 단, 천식 흡입제 또는 자동주입형 에피네프린 등의 특정 약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면 자가 소지 및 자가 투여가 허용됩니다:

1. 캘리포니아 주 면허를 가진 의료 제공자가 작성한 약물명, 복용 방법, 용량, 복용 시간표, 학생이 자가 소지/자가 투여가 가능함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
2. 자가 휴대/투약에 동의하고, 학교 간호사 또는 의료 담당자가 의료 제공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부작용 발생 시 학군 및 학교 직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
3. 학생과 학교 간호사가 서명한 "수업 시간 중 약물 자가 소지 및 자가 투여 계약서" 작성. 학생이 약물을 오용하거나 부적절하게 투여할 경우, 관련 징계 조치 및 자가 소지/자가 투여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교육법 제48900조).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차트 스쿨은 학교 간호사 및 훈련받은 직원에게 비상용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이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EC 제 49414 조).

구강 건강 평가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킨더가든 학생 또는 처음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1 학년생은 해당 학년도 5 월 31 일까지 구강 건강 평가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육법 제 49452.8 조]. 이 평가는 공립학교 최초 등록일 기준 최대 12 개월 이전부터 수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구강 건강 평가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또는 면허/등록을 받은 구강 건강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구강 건강 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보험을 받는 치과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비용 부담이 어려울 경우, 자녀의 구강 건강 평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평가를 이행하지 못하는 학생과 가족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 출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면허가 있는 치과의사 또는 기타 구강 건강 전문가가 학교 내 무료 구강 건강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학생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평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다음 링크에서 '구강 건강 평가 거부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https://www.lausd.org/Page/19215 . 학교 내 구강 건강 평가 중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어떤 형태의 치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구강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oralhealthprogra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학생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가족이 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https://www.lausd.org/Page/19215 에서 "구강 건강 평가 거부 양식(dental opt-out form)"의 해당 섹션을 작성하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학습 시 의료 지원

모든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현장학습에 대한 서면 동의서와 의료 처치에 대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나 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현장학습 출발 최소 5 일 전까지 필요한 모든 약, 물품, 장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숙박을 포함한 현장학습에서 일반의약품(OTC) 투여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숙박 현장학습 중 일반의약품 복용 요청 및 사전 승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과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제공자의 서명 및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숙박 현장학습 약물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의 경우, "수업 시간 중 약물 복용 요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 양식에도 학부모/법적 보호자 서명과 캘리포니아 면허 의료 제공자의 서명 및 날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은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작성한 건강 이력서(Health History form)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이 특수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프로토콜)가 필요한 경우, 현장학습 날짜를 포함한 최신 학부모 동의서와 의료 제공자 승인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는 https://lausd.org/parent-resources 에서 가능합니다.

신체 검사

미국소아과학회(AAP)의 Bright Futures 기준에 따라, 1 학년 학생에게는 종합적인 신체검사 및 건강평가가 권장됩니다. 또한, 1 학년 입학 전 18 개월 이내 또는 입학 후 3 개월 이내에 건강 선별 및 평가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코드 제 12010, 124085 조). 이 검사는 민간 병원, 보건소, 또는 교육구 산하 학생 건강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에 처음 등록하는 학생은 최근의 신체검사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학생이 의료 보험이 없거나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메디칼(Medi-Cal) 수혜 대상인 경우, LA 통합교육구의 학교 기반 클리닉(SBC) 중 한 곳에서 무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예약이 필요할 경우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자녀가 학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년 서면 진술서를 학교 관리자와 간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법 제 49451 조).

학생의 시력 및 청력 검사는 주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됩니다 (교육법 제 49452 조). 또한, 7 학년 여학생과 8 학년 남학생은 척추측만증(척추의 비정상적 만곡)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기를 원할 경우, 매년 서면 진술서를 학교 관리자와 간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법 제 49451 조).

9-12 학년 학생 중 교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려는 학생은 매년 종합 신체 검사(스포츠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현재 정책을 준수하는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제공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 의료 제공자가 없는 학생의 경우, 학교 의사 및 간호사로부터 예약제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체 검사 및/또는 스포츠 검사 예약은 학생 의료 서비스(213) 202-7584 또는 (213) 202-7590 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12532#spn-content 를 방문하십시오.

학교 정신 건강 (SMH)
학교 정신 건강 및 웰빙 서비스(SMH)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이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학교, 클리닉, 웰니스 센터, 교육구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학교 정신 건강 클리닉 및 웰니스 센터 개요 및 접수 절차
SMH 클리닉과 웰니스 센터는 면허 소지 소아정신과 의사 및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증, 불안, 행동문제, 외상 치료를 위한 근거 기반 치료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SMH 등록 학생 중 메디칼 가입자 또는 무보험자는 약물 치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 및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클리닉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서비스 접수는 https://www.lausd.org/smh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개입, 사후 관리
자살은 가족, 친구, 학급 친구, 직장 동료,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자살 예방은 학부모, 보호자, 지역사회 단체, 정신 건강 전문가 등 학생을 지원하는 모든 성인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노력입니다. 목표는 교육, 인식 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 발생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긴급** 상황의 경우, 911 에 전화하십시오. 정신과 응급상황 시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24 시간 ACCESS 센터 (800) 854-7771 에 연락하십시오.

위기 상황 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988 또는 자살 및 위기 생명선 800-273-8255 번으로 연락하십시오(연중무휴 24 시간 운영).

추가 정보, 상담, 접수 관련 사항은 학생 및 가족 웰빙 핫라인 (213) 241-3840 또는 https://www.lausd.org/smhws 를 방문하십시오. SMH 직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월~금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 근무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웰니스 센터
웰니스 센터는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웰빙 증진, 진로 경로 등을 제공합니다. 웰니스 센터는 지역사회 건강기관과 LA 통합교육구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종합적인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예방접종, 신체검사(스포츠 신체검사 포함), 건강검진, 질병 진료, 민감한 서비스, 행동 건강 서비스, 전문 진료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성인 예방접종, 결핵 검사, 전문 진료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웰니스 센터는 Medi-Cal 및 My Health LA 보험을 받습니다. 보험이 필요한 경우 학생 정신 건강 및 웰니스 서비스 소속 CHAMP 프로그램 (213-241-3848)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최신 정보와 클리닉 및 웰니스 센터 목록은 https://www.lausd.org/smhws 에서 “Wellness Network – Wellness Centers”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간호사-가정 연계 프로그램

간호사-가정 연계 프로그램(Nurse Family Partnership, NFP)은 근거 기반의 간호사 방문 프로그램으로, LA 통합교육구(LAUSD)에 재학 중인 처음 임신한 10 대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건강 교육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 무료이며, 의료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NFP 프로그램의 목표: (1) 임신 결과 개선, (2) 아동 건강 및 발달 증진, (3) 가족의 자립성 향상. NFP 참여 자격: (1) 현재 임신 28 주 미만, (2) 첫 임신, (3) LA 통합교육구 재학생.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Page/12657 , 전화 (213) 202-7580, 이메일: NFPservices@lausd.net 으로 문의하십시오.

학교 기반 메디칼 및 정신건강 서비스

다음은 메디칼(Medi-Cal) 자격이 있는 아동의 학부모/법적 보호자를 위한 정보입니다. 자녀가 메디칼 자격을 갖추는 기준에는 가구 구성원 수, 가족 소득, 장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메디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아동 건강 접근 및 메디칼 프로그램(CHAMP) 무료 헬프라인 (866) 742-2273 으로 전화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CHAMP 를 방문하십시오. 헬프라인 운영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입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필수 서비스 및 학교 정신 건강(SMH) 서비스 동의서에 명시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을 통해 교육구가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더 많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자격이 있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특수교육 평가계획 동의서 또는 IEP, 학교 기반 정서지원 동의서에 서명하면, LA 통합교육구가 메디칼에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메디칼 청구 비허가 양식(Parent Medi-Cal Non-Authorization to Bill)” 양식을 제출하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양식은 (213) 241-0558 로 문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학부모용 특수교육 안내서(절차적 권리 및 보호 포함)』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환 청구를 위해, 교육구는 학생 기록, 의료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반 서비스에 대한 메디칼 상환은 학생의 다른 의료 환경에서의 메디칼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의 학생 메디칼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LA 통합교육구 메디칼 상환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이동성과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의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학생 안내서의 '개인정보 보호 공지문'을 참고하십시오.

학생 건강 보험

LA 통합교육구 아동 건강 접근 및 메디칼 프로그램 (CHAMP)은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자녀를 메디칼, 커버드 캘리포니아 (Covered California) 등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등록 지원이 필요한 경우, CHAMP 헬프라인 (213) 241-3840 으로 전화하거나 https://www.lausd.org/champ 를 방문하십시오. 학교는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CHAMP 사무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프라인 운영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입니다.

건강 및 웰빙 원격 의료 서비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외부 제공업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련 원격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동의 기반 서비스입니다:

1. 신체 건강 원격진료 서비스는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신 건강 원격진료 서비스는 학교 또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동의서 또는 신청서를 보시려면 www.lausd.org/telehealth 를 방문해 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 연간 공지: 콘돔 제공 프로그램(CAP)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적이며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HIV/AIDS 및 성병(STD)은 지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보건 통계와 보고서에 따르면 10 대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이 있는 활동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육구는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금욕을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절제를 실천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HIV/AIDS 의 성적 전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그리고 보건 및 의료 당국과의 협력 하에, 중등학교에서는 콘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992 년에 학생에게 콘돔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정했으며,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서면으로 학교 간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됩니다.

교육구의 콘돔 제공 프로그램(CAP)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을 통해 요청한 학생에게 무료로 콘돔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콘돔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 간호사 또는 지정된 CAP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콘돔을 제공함에 있어 교육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양 서비스

식품 서비스 부서 (Café LA)

Café LA 는 미국 농무부(USDA)의 연방 급식 프로그램인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BP),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NSLP), 아동 및 성인 보육 식사 프로그램(CACFP), 그리고 여름 연속 급식 옵션(SSO)을 제공합니다.

2025-26 학년도에도 캘리포니아주의 보편적 급식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 아침 급식(Breakfast in the Classroom)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CACFP 에 따라 자격이 되는 학교에서는 저녁식사도 제공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식품 서비스 관리자(Food Services Manager)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 서비스 관리자는 급식 운영, 식품 준비, 위생 및 안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시간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영양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13) 241-6419 또는 (213) 241-6409 로 연락하십시오: https://www.lausd.org/cafela

영양 및 Café LA 메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비만, 당뇨병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음식과 생활 방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아동 영양을 위한 최선의 실천 방안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및 영양 정책 개선"은 학생들이 최소 20분 이상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좋은 식품 조달 정책(Good Food Procurement Policy)"은 지역 경제, 환경 지속 가능성, 가치 있는 노동력, 동물 복지, 영양을 지원하는 식품 구매를 촉진합니다.

메뉴는 영양 전문가 팀이 계획하며, 모든 USDA 기준을 충족하는 최고 수준의 영양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합니다. 모든 메뉴는 학생 중심으로 개발 및 승인됩니다. 메뉴, 영양소, 알레르기 정보는 Yum Yummi 웹사이트 https://lausd.yumyummi.com/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Yum Yummi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원칙을 준수합니다:

1. 신선한 샐러드, 라이스볼,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 제공. 중·고등학교는 하루 5~6 가지 주요 메뉴를, 모든 초등학교는 점심에 과일·채소 바를 운영합니다;
2. 통곡물 제품 제공;
3.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제공;
4. 매일 비건 및 채식 옵션 제공;
5. 항생제 무첨가 닭고기만 사용;
6. 총 칼로리 중 지방은 30% 이하, 포화지방은 10% 이하, 트랜스지방은 무첨가;
7. 인공 색소, 향료, MSG, 질산염, 아황산염 사용 금지;
8. 모든 메뉴는 학생 시식 평가를 통해 높은 선호도를 받은 항목만 메뉴에 포함.

학생이 특별식이나 특별 영양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식품 서비스 관리자, 학교 간호사 또는 https://www.lausd.org/cafela 에서 "특별 식사 요청을 위한 LAUSD 의료 진술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 페이지 하단의 영양 정보 및 특별 식 링크에서 다음 양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LAUSD 특별 식사 요청 의료 진술서;
2. 두유 대체 요청서(학부모/법적 보호자용);
3. 영양 분석표;
4. 탄수화물 함량 정보;
5. 식품 알레르기 및 성분 목록.

특별 식단 또는 메뉴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학교 식품 서비스 관리자 또는 영양 전문가 specialdiet@lausd.net 에게 문의하십시오.

기타 모든 식품영양서비스(FNS)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주 또는 지역 기관 및 그 하위 기관은 다음 차별 금지 성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DA)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포함), 장애, 연령, 또는 이전의 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대체 방식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또는 지역 기관이나 USDA 의 TARGET 센터 (전화: (202) 720-2600, 음성 및 TTY) 또는 연방 릴레이 서비스 (전화: (800) 877-8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AD-3027 양식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ad-3027.pdf, USDA 사무소, (866) 632-9992 로 전화, 또는 USDA 로 편지를 보내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완성된 양식 또는 서신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USDA 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우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or
2. **팩스:** (833) 256-1665 또는 (202) 690-7442;
3.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본 기관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3 년 2 월 15 일)

학부모 및 가족 참여

학생,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사무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교와 가정이 굳건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자녀의 교육 성공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교육구 정책,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학부모 결의안(Parents as Equal Partners Board Resolution) 및 학부모 권리와 책임 안내서(Par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가족 참여와 관련된 학교 및 교육구의 실천을 안내합니다. 학교 직원과 가족은 https://www.lausd.org/page/9651 에서 타이틀 I 학교를 위한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참여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lausd.org/sfac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존중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다양한 리더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방 타이틀 I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SSC)를 설치해야 합니다. SSC 위원으로서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범주별 자금 사용, 그리고 학부모 참여 계획 등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합니다. 또한, 21 명 이상의 영어 학습자(EL) 학생(재 분류된 유창 영어 구사자(RFEP)는 제외)이 있는 모든 학교는 영어 학습자 자문위원회(ELAC)를 설립해야 합니다. 위원은 학년도 초와 결원 발생 시 선출됩니다. 교육구는 또한 각 학교 ELAC 위원장이 참여하는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위원회(DELAC)를 설립해야 합니다. DELAC 외에도, 교육구 차원에서 두 개의 위원회가 더 있으며, 위원들은 교육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배우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로, 다양한 구성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대표자는 공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 기타 학생의 학부모, 장애 학생 및 성인, 일반 교사, 특수교육 교사, 기타 학교 직원, 공사립 기관 대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필요에 관심 있는 사람 등입니다. CAC 는 특수교육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교육구 차원의 위원회는 학부모

자문위원회로, 교육구의 지방통제 및 책무성 계획(LCAP)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은 지역별 회의에서 선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committees 를 방문하십시오.

여러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 외에도, 가족들은 학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역 앰배서더 세션에 초대됩니다. 앰배서더 세션은 세 가지 경로로 구성되며, 각 경로는 세 번의 모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로는 특수교육 지원,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방통제 및 책무성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usd.org/ambassadors 를 참고하십시오.

매년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 경험 설문조사(School Experience Survey)를 통해 학교가 파트너로서 학부모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육구에 제공합니다. 설문조사는 봄에 실시되며,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ses 또는 이 안내서의 학교 경험 설문조사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질문, 우려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할 수 있으며, 차별, 괴롭힘 등 통합 민원 절차(UC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식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핸드북의 UCP 섹션을 참조하거나 학생 시민권 사무소에 (213) 241-7682 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EquityCompliance@lausd.net 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s://schooldirectory.lausd.net/schooldirectory/ 에서 학교 정보를 검색하고, 예산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강화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교육구 및 주 우선순위 또는 이니셔티브, 학부모 리더십 및 역량강화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영어 학습자, 이주 가정, 장애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는 학교 기반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과 컨퍼런스는 학교와 지역 단위에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usd.org/page/9651 또는 https://www.lausd.org/regions 에서 확인하십시오. 특수교육국은 장애 학생 학부모를 위한 무료 자원과 자녀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3) 241-6701 로 전화하거나 https://www.lausd.org/sped 를 방문하십시오.

학부모 자원 봉사자
LAUSD 는 자원봉사자를 가정과 학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 성취를 지원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여깁니다. 학부모는 자발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학교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구 직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교육법 51101(a)(3) 조항 참조). 온라인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부모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usd.org/volunteer 를 참조하거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학부모 포털 및 모바일 앱
학부모 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 진행 상황과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parentportal 를 방문하십시오.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통학 버스 노선 및 일정, 출석,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영어 능력 재 분류 정보, 영재 알림 등이 포함됩니다. 학부모는 학교 또는 LAUSD 가족 핫라인(213-443-1300)에 연락해 개인 식별 번호(PIN)를 받아 자녀의 정보와 계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패밀리 아카데미는 가족의 역량을 활용하여 자녀의 유아기부터 대학 및 진로 성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자녀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학습과 진로,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웨비나 및 대면 행사 목록은 https://www.lausd.org/familyacademy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또한 성인 및 직업 교육 부서에서 주최하는 7 개 클래스로 구성된 "평등 과정 경로(Equity Course Pathway)"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은 코호트로 학습하며 문화적으로 관련된 커리큘럼을 배우고, 동료들과 학부모 참여가 학생 성취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공유하며, 자녀 교육에 계속 참여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은 참가자들이 사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양방향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학습의 적용을 보여줍니다. 네 가지 경로(다국어 학습자,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습자, 영유아 학습자, 특수교육 대상 학습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가족 헬프 데스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부모/법적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직원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는 LAUSD 가족, 지역사회, 직원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 헬프 데스크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오후 5:00 에 (213) 443-1300 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교실 참관

학부모/법적 보호자 및 교육권자와 관련하여,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제 1116 조: 학부모 및 가족 참여 항목에서는 가족이 “교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자녀의 수업 참여 및 자원봉사 기회, 교실 활동 참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1101 조는 학부모의 교실 참관은 “요청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등록한 교실 또는 자녀가 등록할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 교육구 내/간 지역 간 전학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임의적인 시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실 참관을 요청하려면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책무 보고서

교육구는 매년 각 학교에 대해「학교 책무 보고서 (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 SARC) 」를 발행해야 합니다 [교육법 제 35256 조]. SARC 는 매 학년도 2 월 1 일까지 발행되며, 웹사이트 https://www.lausd.org/Page/8027 에서 확인하거나 학교에 요청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 성공법(ESSA): 타이틀 I 학교 학부모 알 권리 안내

매 학년도 시작 시, 타이틀 I 자금을 받는 교육구는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교사의 전문 자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해당 교사가 담당 학년 및 교과목에 대한 주정부 자격 및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부;
2. 교사가 임시 또는 기타 임시 자격 (예: 임시 인턴 자격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3. 교사가 자신이 인증 받은 전공 분야에서 수업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타이틀 1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생을 지원하는 보조교사(TA)의 자격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A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usd.org/Page/1360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임시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 있는 사람을 TA 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교육법 제 44926 조). 모든 TA 는 칼리지 또는 4 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교사 및/또는 TA 의 전문 자격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학부모 알 권리(Parent’s Right to Know)”와 관련하여 문의하였음을 알리고, 확인을 원하는 교직원의 자격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학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SFSS)

학교 및 가족 지원 서비스(SFSS)는 장애 학생 가족이 자녀의 교육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FSS 는 특수교육 관련 문의에 응답하며, 교육구 직원, 학생, 학부모/법적 보호자 간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 관련 문제 해결을 촉진합니다.

또한, SFSS 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유자가 제기하는 특수 교육 위반 관련 불만사항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구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외부 불만 절차를 진행할 필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complaint)"이란 IDEA(장애인 교육법), 캘리포니아 교육법의 특수 교육 관련 조항 또는 교육구의 특수 교육 정책 및 절차 위반에 대한 주장을 의미합니다. SFSS 는 교육구 직원과 학부모/법적 보호자 간의 협력을 도와 적법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이끕니다. "해결책(resolution)"은 (1) 학교 또는 교육구 부서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적절한 구제 제공) 또는 (2) 특수 교육 위반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제안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부서 학교 및 가족 지원 서비스(SFSS)에 (213) 241-6701 로 문의하십시오.

학부모 포털 (Portal)

학부모 포털은 24 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모든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부모 포털에 가입하여 학생의 학업 성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학교 기록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lausd.org/parentportal 에서 확인하십시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1. 개인 이메일 주소;
2. 사용자명 및 비밀번호(임의로 설정);
3. 학생의 4자리 보안 코드(PIN 코드, 우편 발송 또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음);
4. 학생의 생년월일;
5. 학생의 교육구 ID 번호.

현재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

1. 출석 및 시간표;
2. 성적 및 과제;
3.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특수교육 학생 대상).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캠퍼스에서 학부모 포털 계정으로 교육구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사용이 간편한 모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의 성적, 과제, 출석, 학교 행사, 교육구 캘린더, 급식 메뉴, 버스 노선 및 지연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에서 “LAUSD”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Connect) 알림 시스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커넥트(Connect)라는 교육구 전용 알림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부모/법적 보호자 및 직원에게 비상 상황, 출석, 학교 행사, 기타 학생 및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음성 메시지를 가정, 직장,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따른 요금은 학부모/법적 보호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생 비상 연락처 정보 양식(Student Emergency Information Form)을 작성하여 일반 알림, 출석 업데이트, 비상 알림을 받을 전화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시스템은 LAUSD 전체에 몇 분 내로 연락할 수 있어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정보에 신속히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려면 https://www.lausd.org/Page/9244 에서 학생 비상 연락처 정보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커넥트에 어떤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나요?
학교가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1. **일반 알림 메시지**: 비상 상황이 아닌 메시지로, 하루 중 여러 번 발송될 수 있으며, 다가오는 행사 안내, 알림, 중요한 정보 전달 등에 사용됩니다;
2. **출석 알림 메시지**: 학생의 무단 결석 또는 지각(한 과목 이상 또는 하루 전체)에 대해 아침 또는 이른 저녁 시간에 전송됩니다. 이 경우, 낮 시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예: 휴대전화)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낮 시간에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 전화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상 알림 메시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 발송되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평소 연락이 가장 잘 되는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커넥트는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번호(일반 및 출석 알림용 번호 포함)로 연락하여 반드시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도록 합니다. 이 번호는 학생 비상 연락처 정보 양식에 기재된 대체 연락처가 아니라 학부모/법적 보호자 본인의 번호여야 합니다. 대체 연락처는 학교에서 학부모/법적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만 사용됩니다;
4. **교사 메시지**: 학생의 학업 진행 상황, 행동, 학습 습관 및 기타 교실 관련 소식을 제공합니다. 이 메시지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제공한 일반 연락처를 통해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커넥트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1. 교육구는 뉴스레터, 동영상, 첨부 파일, 그래픽 등 멀티미디어 자료가 포함된 메시지를 주로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시려면, 최소한 1개의 이메일 주소를 학교에 제공해 주십시오.

중요한 전화 수신 팁

1. 학교(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서 전화가 오면, 수신자 발신자 번호에 학교(또는 교육구) 전화번호가 표시됩니다;
2. 메시지를 들을 때 배경 소음이 있으면 시스템이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는 사람이 받았는지, 자동응답기/음성사서함이 연결됐는지 구분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배경 소음이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용한 곳에서 듣거나, 휴대전화의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3. 메시지의 일부를 놓쳤을 경우, 전화를 끊지 말고 * (별표) 버튼을 누르면 전체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855) 473-7529로 전화해 최근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 알림 수신 거부(Opt-out)
모든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되는 일반 알림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받았을 때, 메시지 끝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수신 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신을 원할 경우, 이전에 메시지를 받았던 전화번호 (855) 502-7867로 전화해 주십시오;
2. 문자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려면, 문자 메시지 끝에 안내된 방법을 따르십시오. 다시 수신을 원할 경우, 91841로 “START LAUSD”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3.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려면, 이메일 하단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다시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알림 관리 사무실 (Mass Notification Office)로 연락하십시오.

수신 거부는 일반 알림에만 적용되며, 출석 및 비상 연락은 계속 정상적으로 발송됩니다.

학생이 작성한 학생 비상 연락처 정보 양식을 학교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학교만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https://parentportalapp.lausd.net/parentaccess/의 학부모 포털에서 비상 연락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최신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십시오.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로 안전하게 관리되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보안 정책을 준수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가족 지원 헬프 데스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부모/법적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탁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헬프 데스크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오후 5:00(공휴일 제외) (213) 443-1300 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헬프 데스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교직원들에게도 탁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헬프 데스크는 평일 오전 7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공휴일 제외) (213) 241-5200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LAUSD 가족 및 직원 대상 정보기술 서비스(ITS) 지원 센터

추가 지원을 위해 LAUSD 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대면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및 직원의 기기 및 인터넷 접속 지원;
2. 학생 비밀번호 및 단일 로그인(SSO) 지원
3. 교육구 애플리케이션 지원.

지원 센터는 평일 오전 7 시 30 분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공휴일 제외) 운영됩니다. 위치 목록은 www.lausd.org/itsupportcenters 에서 확인하십시오.

배상

학생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 및 학습 기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재와 장비가 제공됩니다. 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재, 도서관 책자, 기기 및 기타 학교 소유 물품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학생이 이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교재, 도서관 책, 기기 및 기타 학교 재산을 조심히 다루는 본보기를 보이기;
2. 대여 기간 동안 책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학생과 함께 마련하기;
3. 학생에게 고의적 파손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리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 재산에 손상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 기기가 손상된 경우, 손상된 기기를 반납하면 대체 기기가 제공되어 학습 접근성이 유지됩니다. 학생이 고의적으로 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교과서를 찢거나 훼손하는 등 학교 재산을 손상한 경우, 민법과 교육법 및 교육구 정책에 따라,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교과서 및 기기 포함 학교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노숙자 학생이나 위탁 보호 대상 학생에게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 1714.1 조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민사적 손해에 대해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최대 $25,000 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 48904(a)(1)조는 미성년자가 대출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학교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해당 책임은 2025 년 1 월 1 일 기준 최대 $25,100 까지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교육법 제 48904(a)(2)]. 학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물품을 반납하거나 미납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을 반납하거나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상부서에서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판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해당 물품이 공공자금으로 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고의적 훼손 또는 분실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학생이나 졸업생에게 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1. 과제 점수 감점;
2. 수업 활동 참여 제한;
3. 도서관 등 교내 교육 시설 이용 제한;
4. 성적 또는 성적표 발급 거부 또는 보류;
5. 졸업장 발급 거부 또는 보류;
6. 방과 후 활동, 클럽, 스포츠 참여 제한 또는 금지;
7. 교육활동, 현장학습, 학교 행사 참여 제한 또는 제외.

학교 재산이 고의적으로 손상된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법적 보호자와 학생에게 현금 배상 외의 대안 제시, 이러한 대안은 반드시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나 근로를 통한 대안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상세 내역이 포함된 청구서 제공;
3.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고, 매회 납부 시 영수증 발급.

서비스나 노동을 통한 변제의 예로는 도서관 봉사, 서비스 학습 프로젝트 과제 수행, 연구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비상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교는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응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본관 사무실에서 통합 안전 학교 계획(Integrated Safe School Plan, ISSP)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의 비상 대응 절차, 학생 인계 장소 및 집결 장소 숙지;
2. 연락처 정보 변경 시 학부모 포털 또는 서면으로 학교에 통보;
3. 학교 또는 교육구로부터 전송되는 비상 메시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

4. 학생은 비상 시 부모를 본보기로 삼습니다. 침착하고 준비된 부모의 모습은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LAUSD 의 비상 대비 및 대응 관련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usd.org/pei .

언론 접근 및 홍보

가끔 언론 보도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체육 행사, 학교 집회, 특별 프로그램, 뉴스가치가 있는 활동을 촬영하거나 취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에 담기 위해서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본 핸드북과 함께 제공되는 "홍보 및 사진/영상 사용 동의서(Authorization and Release Form)"에 서명함으로써 LAUSD 가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LAUSD.org,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hreads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에 학교나 교육구의 긍정적인 소식을 공유할 때 적용됩니다. 학생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 인터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양식에 서명하지 마시고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 양식에 서명했더라도 학생 본인이 인터뷰나 사진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usd.org/Page/364 .

공개 및 동의 양식은 학생이 캠퍼스 내에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 있을 경우, 기자나 사진작가는 별도의 허락 없이 질문,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과 사전에 대화를 나누어, 자녀가 학부모의 의사를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출석

거주지 학교

6 세부터 18 세까지의 모든 아동은 예외가 없는 한 공립 의무 교육 대상이며,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해당 학생을 거주지 지역의 정규 수업이 있는 공립 학교 또는 대안 교육학교나 수업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교육법제 48200 조]. 이혼, 법적 별거, 또는 미혼 부모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학생은 부모/법적 보호자 중 한 사람의 거주지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학교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커뮤니티 칼리지 제외)은 엄격히 금지되며, 등록 주소는 반드시 하나만 가능합니다 [정부 법(Government Code) 제 244(b)조]. 학교는 거주지 확인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나이 또는 거주지를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인정합니다. 학교 등록을 위해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보장번호(SSN)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등록 시 거주지 증명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게 되며, 이 경우 등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부모/법적 보호자와 거주하지 않아도 교육구 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에 따라, 정규로 허가 받은 아동 기관, 위탁 가정, 또는 가족 가정에 배치된 학생 (책임 있는 성인이 학교에 배치 관련 증빙 제출 필요);
2. 동반 보호자가 없는 노숙자 청소년;
3. 타 교육구 전학 허가서(Inter-District Permit)가 승인된 학생;
4. 법적으로 독립된 미성년자로서 교육구 관할 내에 거주하는 학생;
5. 교육구 관할 내에 위치한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6.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과 함께 사는 학생(학교 또는 교육구 직원의 확인 필요).

거주지 학교 찾기는 https://rsi.lausd.net/ResidentSchoolIdentifier/ 또는 (213) 241-1000 으로 문의하십시오.

군인 가족의 자녀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현역 군인 가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특정 교육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1) **즉시 등록**: 미납 요금, 벌금 또는 서류 누락이 있어도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2) 기존 학교 계속 재학(School of Origin): 학년 중 이사를 해도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3) **연계 학교 진학(Matriculation):** 기존 학교의 연계 과정(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으로 계속 진학할 수 있습니다. (4) **군인 신분 변경 후 재학 유지**: K–8 학년 학생은 학년도 말까지 현재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5)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자격**: 자세한 내용은 '전학 및 전학 허가(Permits and Student Transfers)'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6) **지역 졸업 요건 면제 자격**: 자세한 사항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7) **부분 학점 인정(Partial Credits)**: 자세한 내용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학사 일정

교육구 학사 일정 및 교직원 연수일(학생 휴학일)은 2025-2026 학사일정에서 확인하거나 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교직원 연수일이 예정된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예정된 연수일 최소 1 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교육법 제 48980(c)조].

학생의 학교 선택 옵션

교육법 제 48980(h)에 따라,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가 배정된 학교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s://explore.lausd.org 를 방문해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학교 이름, 주소, 학업 관심사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 인근 학교 검색;
2. 학교, 프로그램, 활동, 주요 학업 특성 등 검색;
3. 동네 또는 교육구 전체 학교 비교;
4.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 성과 데이터 확인.

모든 신입생 및 재학생은 다양한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정보, 신청 일정 및 선발 절차는 https://apply.lausd.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후 선발되어 최종 입학 허가를 받아야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Choices) 프로그램;
2. 공개 등록 (Open Enrollment);
3. 지정 선택 구역(Zones of Choice).

학생 전학 허가 및 절차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과 가족이 최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가(퍼밋)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학교 교장 또는 지정된 행정 담당자는 학생, 학부모/법적 보호자, 지역사회에 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1 번의 신청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학군 간 전학 허가
전학 허가 및 학생 전학 사무국(Office of Permits and Student Transfers)은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요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교육구 전학 허가는 LAUSD 밖으로 전학하거나, 다른 교육구에서 LAUSD 로 전학하는 학생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타 교육구 전학 허가는 전학 허가 및 학생 전학 사무실을 통해서만 처리되며, 개별 학교에서는 승인, 거절, 취소할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허가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https://www.lausd.org/Page/17471)으로 제출해야 하며, 각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심사됩니다. 모든 학군 간 전학 허가 신청은 전자 방식으로만 접수되며,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서면 신청 불가). 학생 1 인당 학년도별 1 번의 신청만 가능하며, 학부모는 학년도별 하나의 학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전출(OUTGOING)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신청 기간은 매년 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입니다. 단, 학부모/법적 보호자 직장 사유에 한해 이 기간 이후에도 타 교육구로의 전학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 교육구는 아래 사유에 한해 타 교육구로의 전학 허가를 심사합니다:
1. 학부모/법적 보호자 직장;
2. 특수 종합 프로그램;
3. 재학 연속성;
4. 형제자매 허가;
5. 보육;
6. 괴롭힘 피해 학생;
7. 현역 군인 자녀;
8. 기타 예외 요청.

전입(INCOMING)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신청 기간은 매년 2 월 1 일부터 시작되며 연중 내내 접수 가능합니다. 전입 허가는 다음 사유에 따라 심사됩니다:
1. 학부모/법적 보호자 직장;
2. 특수 프로그램;
3. 재학 연속성;
4. 형제자매 허가;
5. 보육;
6. 괴롭힘 피해 학생;
7. 현역 군인 자녀;
8. 기타 예외 요청.

학군 간 학 허가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tudentpermits.lausd.net/ 를 방문하거나 전학 허가 및 학생 전학 사무소(213) 202-754 로 문의하십시오.

교육구 내 전학 허가
트랜지셔널 킨더가든 (Transitional Kindergarten)부터 12 학년의 학생을 둔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교육권자는, 거주지 학교가 아닌 다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소속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교육구 내 전학 허가(Intra-District Permit)라고 합니다. 교육구 내 전학 허가 신청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LAUSD 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해당 학교의 정원과 교직원 배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구 내 전학 허가는 통학(버스) 지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년도 중 언제든지 허가가 발급될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에 대한 신청은 3 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초기 허가는 요청 학교와 재학 중 학교 양쪽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후에는 요청한 학교에서 매년 허가 갱신을 담당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거주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합니다.

교육구 내 전학 허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직장;
2. 특수 프로그램;
3. 형제 자매 재학:
4. 보육;
5. 안전 및 보호 목적;
6. 재학 연속성;
7. 예외 사유;
8. 기타 특별한 상황.

전학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학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이의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교육권자는 작성된 이의 신청서를 지역 운영 관리자(Region Administrator of Operations)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학 허가 절차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LAUSD 소속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http://studentpermits.lausd.net/

출석

모든 학생이 규칙적으로 정시에 등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결석할 경우(무단이든 허가된 것이든), 중요한 수업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출석률이 좋은 학생들은 학업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추가 정보 및 자료는 학생 지원 및 출석 서비스(Pupi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usd.org/Page/12605#spn-content

캘리포니아 의무 전일제 교육법
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모든 학생은 법적 예외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교육 대상자는 공립 주간학교 또는 계속교육 학교(continuation school)에 출석해야 하며, 해당 학군의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수업 일수 및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거주지 학군 내 공립학교에 출석해야 하며,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을 책임지는 개인은 학생이 해당 학교에 정규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교육법 § 48200). 학생은 부모/법적 보호자, 교육권자, 또는 보호자의 거주지 관할 공립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결석 사유 확인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후 10 일 이내에 결석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결석이 미확인/무단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고, 무단결석 누적으로 집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석에는 지각, 조퇴, 특정 수업 시간 결석 등 부분 결석도 포함됩니다.

질병 또는 격리로 인한 결석은 다음 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행정규칙 타이틀 5, §421):
1. 교장;
2. 학교 간호사 또는 공중 보건 간호사;
3. 교장이 지정한 승인된 학교 직원;
4. 교사;
5. 결석 확인 업무를 맡은 기타 교육구 직원.

결석 사유를 통보할 수 있는 허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서면 메모;
2. 의사 소견서;
3. 학부모/보호자의 확인된 이메일 주소에서 보낸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
4. LAUSD 학부모 포털(Parent Portal)을 통한 결석 사유 업로드.

결석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학교 직원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결석 사유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행정규칙 타이틀 5, §306).

학부모 포털에 업로드 된 메모를 포함한 모든 결석 사유 메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학생 이름;
2. 결석한 날짜:
3. 결석 사유;
4. 지각 또는 조퇴 시간(해당 시)
5. 학생 생년월일(선택 사항).

과도한 부모/보호자 허가 결석 이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허가 결석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결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적절한 증빙 서류가 제출되면 결석이 공결로 인정됩니다(교육법 § 48205):

1. 학생 본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식 참석;
2. 직계 가족의 현역 군 복무(기간은 학교 관리자 재량);
3. 직계 가족 또는 부모/보호자가 학생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장례식 또는 애도(사안당 최대 5일, 장례 장소 무관);
4. 배심원 의무;
5. 학생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6. 학생이 양육권을 가진 자녀의 질병 또는 의료 예약(의사 소견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7. 의료, 치과, 안과, 척추 지압 치료;
8. 정신적 또는 행동 건강(학생의 정신/행동 건강을 위한 결석);
9. 선거구 위원회 멤버 활동;
10. 군 입대 절차(MEPS);
11. 중고등학생이 시민 또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a. 학년도당 1일 공결 허용
    b. 추가 공결은 행정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
12. 문화 행사 또는 전통 행사 참여 ("문화"는 특정 집단의 습관, 신념, 전통 등을 의미함);
13. 격리(Quarantine);
14. 가족 구성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 안전계획 수립, 피해자/유족 지원 서비스 이용 (사건당 최대 3일)

정당한 개인 사유 – 행정관리자 승인 필요
정당한 개인 사유로 결석할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학교 행정 관리자에게 결석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석 요청 시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결석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 결석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법원 출두;
2. 비영리 단체에서 주최하는 교육 관련 컨퍼런스(입법/사법 관련);
3. 취업 관련 컨퍼런스;
4. 장례식 참석(사건당 추가 일수 필요 시);
5. 학생의 종교 관련 휴일 또는 의식 준수;
6. 종교 수련회 참석(학기당 1일 초과 불가)
7. 피해자 지원, 애도 상담 또는 안전 계획 수립(사건당 추가 일수 필요 시);
8. 종교 교육(월 최대 4일, 최소 수업일 출석 필요), '도덕 및 종교 교육을 위한 학교 출석 면제 요청서' 필요;
9. 자녀 직장 체험의 날('Take Your Child to Work Day') 참여, *학교 통지 및 부모/법적 보호자의 책임 동의서* 필요.

정당한 개인 사유 – 행정 관리자 승인 불필요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개인 사유로 인정되며, 별도의 *학생 결석에 대한 행정관 승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연예계 활동(연속 5일 또는 학년당 최대 5일)
2. 의료적 격리 또는 면제
3. 비영리 공연 예술 단체 활동(학년당 최대 5회)
4. 항소 절차를 통해 정학 처분이 취소된 경우.

결석한 학생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결석 기간 동안 놓친 학습 내용을 학습 과제나 평가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교사는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과제나 평가의 유형, 보완 여부 및 제출 마감일을 판단합니다.

무단 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거나, 위에서 언급된 공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무단 결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석이 누적될 경우, 학생은 무단 결석자(truant)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석 및 학업 출석 검토 위원회(SARB) 관련 내용 참조]

무단 결석 학생
전일제 또는 대체 교육이 의무인 학생이 유효한 사유 없이 한 학년도에 세 번 이상 30 분 이상 지각하거나 수업을 빠질 경우, 해당 학생은 법적으로 무단 결석자로 간주됩니다. [교육법 EC § 48260 (a)]

학생이 처음 무단결석자로 분류될 때, 교육구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교육법 § 48260.5):
1. 학생이 무단 결석자로 분류되었음;
2.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음;
3.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LAUSD는 다양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5.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 담당자와 상담할 권리가 있음;
6. 학생이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7.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하루 동안 학교 및 수업에 동행하는 것이 권장됨.

무단 결석 통지
6~18 세 학생이 한 학년도에 무단결석, 조퇴, 30 분 이상 지각이 3 회 이상 누적될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무단결석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결석 후 10 일 이내에 유효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결석은 미확인 결석으로 남아 무단결석에 포함됩니다. 동일 학년도 내 LAUSD 소속 모든 학교에서의 무단 결석 기록은 누적됩니다. 통지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발신 학교에 문의해야 하며, 모든 출석 기록 수정은 해당 학년도 6 월 30 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습 무단결석 및 학교 출석 심의 위원회(SARB)
한 학년도에 3 회 이상 무단결석자로 보고되고, LAUSD 직원이 최소 1 회 이상 학부모/법적 보호자 및 학생과 상담을 시도한 경우, 학생은 '상습 무단결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학교의 일반적인 개입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에게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법 § 48262)

상습 무단결석자 또는 출석이 불규칙한 학생은 SARB(학교 출석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SARB 담당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심의 날짜, 시간, 장소를 안내하며, 학생과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SARB 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학생은 법원 조정 프로그램에 회부될 수도 있으며, 이는 학생의 특수한 출석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법 § 48320).

외국인 학생 입학 사무실(FSAO)

학생 지원 및 출석 서비스(Student Support and Attendance Services), 학생 서비스(Pupil Services) 산하 프로그램인 외국인 학생 입학 사무국(Foreign Student Admissions Office, FSAO)은 LA 통합교육구에서 지정한 고등학교에 외국인 학생을 배정하고 입학 절차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F-1 학생 비자나 J-1 교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은 중등/고등학교 수준에서만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반드시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FSAO 는 LA 통합교육구를 대표하여 I-20 양식을 발급하거나 고등학교 입학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부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tudyinLA.lausd.net 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studyinLA@lausd.net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SAO 는 학생이나 가족에게 이민과 관련된 법적 자문이나 안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은 본인의 현재 비자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학생 행동 수칙 및 학교 안전

모든 학교를 안전하게: 안전 설계도 (Blueprint for Safety)

안전 설계도는 통합 학교 안전 계획(Integrated Safe School Plan)을 강화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며, 학교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와 실천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 설계도는 학생과 교직원 간에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과 가족의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Every School Safe: A Blueprint for Safety 를 방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WE ARE ONE)

2024 년 11 월 19 일, 교육위원회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이민 단속 위협을 받는 가족을 위한 보호구역이자 안전지대임을 재확인했습니다(교육위원회 결의안 034-24/25). 미국 내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헌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LAUSD 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고 환영받으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학생 또는 가족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usd.org/weareone 을 참고하십시오.

통합 학교 안전 계획 (Integrated Safe School Plan, ISSP)

매년 각 학교는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폭력 예방, 비상 대비, 위협 및 재난 대응 절차 등 학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통합 학교 안전 계획(ISSP)을 수립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ISSP 에 대해 교장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SSC)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각 학교 본 사무실에서 공개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제 32282 조]. ISSP 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학교 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문객 안내

모든 방문객은 교장 또는 지정 담당자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교실 참관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학생이 아닌 아동은 교장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캠퍼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방문객은 교실이나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교실 참관을 요청하는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1. 학교의 공식 참관 요청 절차를 따르기;
2. 교실에 조용히 들어가고, 조용히 퇴실하기;
3. 참관 중 학생, 교사, 보조교사와 대화하지 않기;

4. 수업 참관의 시간 및 횟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5. 참관 후 교사 및/또는 교장과 면담이 필요할 경우 학교의 공식 절차 따르기;
6. 서면 허가 없이 캠퍼스나 학교 행사에서 녹음 또는 촬영 금지.

또한, 방문객은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1. 학교 도착 시 방문자 출입증을 작성할 것;
2. 학교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3. 학교 전체 행동 규칙을 숙지하고 따를 것;
4. 출입증을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원래 위치로 반납할 것;
5. 서면 허가 없이 캠퍼스 또는 학교 활동 중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하지 말 것.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즉시 퇴장 조치되며 향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음식 및 음료 배달 금지

패스트푸드 및 음료의 배달은 학교 급식 기준과 맞지 않고 학교 환경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안전을 위해 교육구에서 승인하지 않은 외부 음식/음료의 배달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배달원이 학교에 배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 학생이 정문, 교문, 주차장에서 배달원을 만나는 경우;
2. 학교 외곽 지정 장소에 음식을 두고 가는 경우;
3. 클럽 모임이나 운동 경기 후 파티 등의 행사에 배달하는 것;
4. 교문 근처에서 음식/음료를 기다리는 경우.

단, 학급 또는 방과 후 클럽/행사 등은 교장의 사전 승인(최소 48 시간 전)과 교직원이 교문 밖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도시락을 잊은 경우,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면 카페테리아에서 무료 급식이 제공됩니다.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SRTS)

안전한 등하굣길 프로그램(Safe Routes to Schools, SRTS)은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도로 환경 개선 및 교육을 통해 교통 안전을 증진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통국(LADOT)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와 협력하여, 안전 교육 캠페인, 학교 주변/지역 도로 개선 사업,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학생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안전 발레 프로그램(Safety Valet Program)은 등교 시간 차량 혼잡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건안전국(OEHS)과 LA 교육구 경찰국(LASPD)이 학교 별 도입을 지원합니다. 교통 안전 및 SRTS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www.lausd.org/Page/4238 또는 https://ladot.lacity.org/projects/safety-programs#safe-routes-to-school .

학생에 대한 행동 수칙

LA 통합교육구는 직원 및 학생과 접촉하거나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지지적이고, 긍정적이며, 전문적이고, 착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직원 또는 학생과 접촉하는 어떤 개인이든 학생에게 부적절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직원 또는 학생과 접촉하는 개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 대한 행동 수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학생의 안전입니다. 모든 직원 또는 학생과 접촉하거나 함께 일하는 개인(예: 자원봉사자, 멘토, 코치 등)은 학생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행동과 책임 있고 윤리적인 행동의 경계를 인식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장려하지만, 교직원 및 학생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과 전문적 기준, 윤리적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피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학생 앞에서 또는 직접적으로 비전문적, 비윤리적, 불법적, 부도덕적, 착취적 행동을 하는 경우;
2. 학생과 단둘이 문을 닫은 공간 또는 학생 전용 공간(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만나는 경우 (단, 평가, 상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학교 관련 목적은 예외);
3. 학교 관리자가 퇴근한 이후 학생과 함께 캠퍼스에 남아 있는 경우 (단, 방과 후 프로그램, 공연/음악 리허설, 학업 팀 지도 등은 사전 행정 승인 시 가능);
4. 학생에게 특별 대우를 하거나, 학교와 무관한 선물,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그에 대해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5. 학생 앞에서 또는 직접적으로 연령에 맞지 않거나,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욕설, 모욕, 위협, 괴롭힘, 차별적이거나 경멸적인 말이나 몸짓을 하는 경우;
6. 연령에 맞지 않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 신체 일부 만지기, 옷 벗기 요청 등;
7. 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행동(신체적 폭력, 폭력 위협 포함);
8. 직장에서 또는 학교 행사 중 음주하거나 불법 약물 또는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9. 교육구 승인 사유와 사전 서면 관리자 학부모 동의서 없이 학생을 개인 차량에 태우는 것;
10. 교육구 승인 외의 활동을 위해 학생을 데리고 캠퍼스 외부로 나가는 행위;
11. 학교와 무관한 목적으로 학생에게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학생에게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구두/서면/전화/이메일/전자기기/웹캠/인터넷/소셜미디어/직접 대면 등으로 연락 교류하는 경우;
12. 적절한 승인 없이 학생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학생에게 요청하는 경우 (단, 학교 공식 목적 및 승인 시 가능).

비록 위 행동이 전문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계 위반이 의심될 경우,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필요 시 수사기관의 허가가 주어졌을 경우 조사 및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을 보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학교 관리자 또는 학생 민권 사무실(213-241-7682, EquityCompliance@lausd.net)로 문의해 주십시오.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회복적 실천(PBIS/RP)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학생생활규범 정책(Discipline Foundation Policy)은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모든 학생과 교육구 및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환영받고, 인정받고, 포용적이고, 존중받으며, 회복적이고 긍정적인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트라우마/회복력 기반 다중지원체계(MTSS) 프레임워크를 도입/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 행동 기대치와 사회정서적 기술 지도, 학생 행동 강화 및 교정, 건강한 관계 형성과 회복적 질문 사용 등 회복적 생활교육이 포함됩니다. LAUSD 의 전략계획은 학교 공동체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출석률 향상, 성적 향상, 정학 감소, 학교의 긍정적 문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긍정적 행동 지원 및 회복적 생활교육 (PBIS/RP)을 적극 실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는 각 학교의 PBIS/RP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는 지역사회 구축 활동 참여, 학교 및 교실 기대치 지원, 적절한 학생 행동 강화, 그리고 회복적 성격의 결과 적용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 및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usd.org/PBIS_RP .

학생/학교 행동 규범

학교 행동 규범은 학생생활규범 정책(Discipline Foundation Policy)을 포함한 교육구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게 결과(징계 등)를 부과하기 전에 학생이 기대에 부응하고 긍정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행정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정치적 행동, 집회, 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학생은 학교 캠퍼스 내에서 표현의 자유 권리를 가지며 정치적 또는 자유 발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한 문헌을 배포할 수 있으며,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 캠퍼스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이나 기타 학교 행사에서 연설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이 외설적이거나 음란하지 않고, 허위나 명예훼손이 아니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재산을 파괴하도록 선동하지 않고, 학교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학생은 이러한 권리를 징계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학교 행정 관리자에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모든 학생과 직원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위, 집회, 연좌농성 등 표현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 관리자 또는 LAUSD 정책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시위 중 자발적으로 캠퍼스나 교실을 이탈한 학생은 학교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학생이 캠퍼스를 벗어난 이후에는 학교 관리자가 학생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생 시위나 집단 이탈로 인해 공공의 질서가 방해받는 경우, 지역 경찰이 개입할 수 있으며, LAUSD 는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해 통제권이 없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교육구 소속 직원은 근무 시간 중이거나 LA 통합교육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을 때, 시위, 자료 배포, 집회, 연좌농성, 집단 이탈 등을 조장하거나 권장하거나 독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행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복장 규정/교복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학습 환경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생 복장 지침
1. 모든 학생은 개인의 안전과 학교 활동에 적합한 복장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 실험실, 목공 수업, 조리 예술 등 특수 프로그램 및 수업은 안전 및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별한 복장 요구사항이나 제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예: 머리망, 안전 고글, 헐렁한

소매 금지, 샌들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복장은 학생 본인이나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신체의 주요 부위를 가려야 합니다. "신체의 주요 부위"는 일반적으로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를 의미합니다;
2.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와 교육위원회 정책은 학생의 성별 표현 권리를 보장합니다. 학생은 전통적으로 다른 성별과 연관된 복장을 입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3. 학교는 공연, 대회, 선거, 축하 행사 등 학교 행사를 위해 복장 지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외설적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차별적, 음란, 명예훼손, 협박성 언어 또는 이미지, 불법 또는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한 무기, 마약, 알코올, 담배, 약물 도구 등을 홍보하는 언어 또는 이미지가 있는 의류, 액세서리, 개인 소지품(가방, 백팩 등)은 금지됩니다;
5. 머리카락, 구레나룻, 콧수염, 수염은 어떤 길이나 스타일로도 허용되며, 옷은 어떤 유행, 스타일 또는 디자인이든 가능합니다;
6. 학생은 십자가 목걸이, 야마카(유대인 모자), 히잡(머리 스카프), 터번 등 종교적 의미를 가진 장신구나 복장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7. 학생은 학교 시간 중 야외 활동 시 모자를 포함한 햇빛 차단 복장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8. 걸스카우트/보이스카우트, 4-H 클럽, ROTC와 같은 공인된 전국적 청소년 단체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단체의 정기 모임 날에 단체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의 복장 규정은 교육구 복장 및 교복 지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는 행정팀, 교직원, 학부모/법적 보호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차원의 복장 규정을 수립하거나 자율 교복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복장 제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택한 복장 규정은 LA 통합교육구의 학생 복장 지침 및 관련 법규와 일치해야 하며,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복장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는 건강과 안전 유지, 또는 교육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학교의 교복 정책은 모든 학부모/법적 보호자, 학생, 교직원에게 충분히 사전에 안내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신입생 등록 시와 매 학년 초에 교복 정책에 대한 안내문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정책에는 교복 착용을 거부(opt out)할 수 있는 선택권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및 신고식 금지 정책 (Bullying and Hazing Policy)

LA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과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습 및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괴롭힘(bullying), 신고식(hazing), 또는 학생과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거나 학습 또는 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정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행동 및 상황을 포함하며, 학교 및 교육구 관련 프로그램, 활동, 행사, 등/하교 중, 그리고 LA 통합교육구의 모든 관할 구역에서 적용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정책은 교육구 관할 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캠퍼스에서 생활할 불가침의 권리를 가집니다(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1 조 제 28 항). 이 괴롭힘 및 신고식 금지 정책은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모든 학교와 직원은 상호 존중과 수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괴롭힘(Bullying)”이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동을 포함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통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결과를 야기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8900.2, 48900.3, 또는 48900.4 항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1. 합리적인 학생이 자신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두려워하게 하는 경우;
2. 합리적인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합리적인 학생이 학교 제공 서비스, 활동 또는 혜택에 참여하거나 누리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합리적인 학생(reasonable pupil)”이란 일반적인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학생 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해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 및 행사에서 괴롭힘을 행한 학생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전자 행위를 포함하는 괴롭힘의 한 형태로, 이는 전화기, 무선 전화기 또는 기타 무선 통신 장치, 컴퓨터, 호출기 등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학교 내외에서 생성되거나 전송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메시지, 텍스트, 음성, 동영상 또는 이미지 전송;
2.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특정 학생을 비방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번 페이지(burn page)’ 게시;
   - 다른 실제 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 학생을 실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사칭하는 행위. ‘신빙성 있는 사칭’이란, 괴롭힘을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사칭하여, 제3자가 그 사칭 된 학생이 실제 그 학생이라고 믿게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 위의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하는 효과를 야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프로필을 만드는 행위. “허위 프로필”이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학생의 프로필을 만들거나, 허위 프로필을 만든 학생이 아닌 다른 실제 학생의 사진이나 특징을 이용해 프로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 수업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LA 통합교육구의 관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적 괴롭힘(cyber sexual bullying)”은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학교 직원에게 전자 기기를 이용해 사진이나 시각적 자료를 유포하거나 유포를 요청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1~4 번의 결과를 야기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시각 자료에는 신체 일부가 드러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하며, 인물 식별이 가능한 경우 아동 음란물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섹스팅(sexting)’과 사이버 성적 괴롭힘은 부적절한 성적 내용의 전자 통신 행위로, 일단 게시되면 해당 이미지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며, 관련자는 징계 조치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섹스팅의 잠재적 결과를 반드시 숙고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교내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나 학생은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해당 주장을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육구 지역 사무국에 문의하거나 https://www.lausd.org/regions 를 방문하십시오.

“신고식(hazing)”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단체나 조직 가입, 입회, 또는 통과 의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고통, 모욕,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신고식에는 체육 경기나 학교 공식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https://www.lausd.org/human-relations 를 방문하십시오.

차별 또는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는 https://www.lausd.org/domain/383 또는 학생 인권 사무실(Office of Student Civil Rights) (213) 241-7682 로 문의해 주십시오.

학생 개인 소지품

귀중품 (휴대전화, 휴대용 기기, 태블릿, 카메라, 전자 게임기, 라디오, 노트북 등)은 분실, 도난,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학교 직원에 의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품(사물함 내 물품 포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및 기타 보조 전자기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어버드, 무선 헤드폰, 스마트글라스 등 보조 전자기기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은 학교 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부 예외 제외). 학생은 캠퍼스에서 스마트폰이나 전자 신호 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해당 기기는 반드시 “전원 꺼짐” 상태로 가방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등교 전, 방과 후,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방과 후 활동 중에는 허용됩니다. 학생은 교직원이 스마트폰 또는 전자기기 사용 중단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관리자의 허가 하에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응급 상황이 발생했거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2) 교사 또는 관리자가 허가한 경우 (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4)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IEP) 또는 504 계획에 명시된 경우; (5) 영어 학습자(EL) 중 레벨 1 또는 2 학생이 번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위탁 가정(foster care) 학생이 HopSkipDrive(HSD) 통학 서비스를 이용하며, 통학 조율을 위해 학교 시간 중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 (7) 만약 가족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할 경우, 학교는 학생이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통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교육구 및 주 지침에 부합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 중 사용 제한과 같이 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용 정책 (RESPONSIBLE USE POLICY)

책임 있는 사용 정책(RUP)은 교육구, 학부모/법적 보호자, 학생 간의 약속으로, 교육구 기술 및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 기준을 명시합니다. RUP 의 목적은 교육구 네트워크, 시스템, 민감한 정보에 대한 무단 또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RUP 에는 긍정적 디지털 시민의식 실천, 개인정보 보호, 비밀번호 관리, 교육구 장비 관리 등 학부모/법적 보호자와 학생의 다양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학년도마다, 교육구의 네트워크, 계정,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모든 학부모/법적 보호자와 학생은 RUP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학교에서 보관됩니다. 동의서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UL-999.15 책임 있는 사용 정책(Responsible Use Policy).

학교 자산 관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수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기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배정받은 학생과 가족은 해당 기기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에 기기가 없는 학생은 학교의 교육기기 담당자(Instructional Device Manager, IDM)에게 연락하여 기기를 배정받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산 관리와 관련된 기타 학부모 자료는 https://www.lausd.org/itam-parentresource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수색

미국 헌법 수정 제 4 조는 개인을 불법 수색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나 특정 제한된 상황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학생을 수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1.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관련 법률이나 규칙 또는 학교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리자가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가질 경우, 관리자는 해당 학생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심하게 된 이유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 및/또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학생이 특정 사건, 범죄, 규칙 또는 법률 위반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목격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의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수색은 학생의 나이, 성별, 위반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여 학생 수색을 진행할 경우, 학교 관계자는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심 사유가 있고, 학생이 특정 위반 사건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있을 때에만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생이 소지한 재킷, 가방, 주머니, 백팩, 기타 물품이나 용기 등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신체를 직접 수색하거나 옷을 벗기는 스트립 수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금지됩니다;
   - 가능한 경우, 학생과 같은 성별의 학교 관계자가 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 수색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행정 관리자 또는 지정된 관계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수색은 항상 두 명 이상의 교직원이 함께 있을 때 실시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필요 시 교내/외 학교 주관 행사에서 일시적으로 금속 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및 퇴학

학생 징계 및 퇴학 지원 사무실(SDES)은 교육구 내 공식 학생 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는 https://achieve.lausd.net/Page/629 또는 (213) 202-7555 로 문의하십시오.

정학은 학생의 행동 조정을 목적으로 수업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에 대해 단일 정학은 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법 48925(d)].

퇴학은 학생을 (1) 즉각적인 감독 및 통제 또는 (2) 교직원의 일반적인 감독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교육법 48925(b)].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서 SDES 는 퇴학이 추천된 학생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청문회와 모든 적법 절차 권리를 보장받도록 책임집니다. 학생은 정학 없이 바로 퇴학 처리될 수 있으며(즉시 퇴학), 이 경우 퇴학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소속 모든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는 퇴학 집행이 유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학 된 학생은 퇴학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교육법 48917 조). 퇴학 기간은 교육위원회가 퇴학을 결정한 학기의 잔여 기간, 해당 학기 및 다음 학기, 또는 1 년까지 가능하며, 이는 위반 행위 및/또는 학생의 사회적 적응 배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학이 추천된 학생은 퇴학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와 교육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학 결정에 대한 항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학 또는 퇴학의 적용 범위는 학교 활동 또는 출석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2. 등/하교 중;
3. 점심 시간 중, 캠퍼스 내외 모두;
4. 학교 주최 행사 중, 행사에 가거나 돌아오는 중;
5. 학교 버스 탑승 중;
6. 온라인 수업 중.

일반적으로 정학 전에는 다른 교정 조치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특정 상황은 예외입니다(교육법 재 48900.5 조).

정학은 감독 하의 정학(예: 교내 정학, 수업 정학 포함)을 포함하여 다른 교정 조치가 효과가 없거나 안전이 위협될 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된 다른 교정 조치는 문서화되어 학생 징계 파일에 보관되며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교육법 제 49069.7 조).

교사는 교육법 제 48900 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 학생을 해당 교과 수업에서 정학 시킬 수 있으나, 제 48900(k)(1)항에 명시된 '고의적 반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chieve.lausd.net/Page/629.

정학/퇴학 사유 (교육법 제 48900 조 이하)

(a) (1)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하였거나 위협한 경우;
(2)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고의로 폭력을 사용한 경우;
(b) 학생이 총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해당 물건을 소지하기 위해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 등 공인 교직원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예외 없이 이를 금지합니다.

(c) 건강 및 안전법 제10편 제2장(11053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제 물질, 주류 또는 기타 중독성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 사용, 판매, 제공하거나 영향 하에 있었던 경우;

(d) 건강 및 안전법 제10편 제2장(11053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제 물질, 주류 또는 기타 중독성 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 협상, 제안하거나, 다른 액체, 물질, 재료를 통제 물질, 주류 또는 중독성 물질로 가장하여 판매, 제공한 경우;

(e) 강도 또는 공갈을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f) 학교 또는 개인의 재산을 손상시켰거나 손상시키려 한 경우;

(g) 학교 또는 개인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경우;

(h) 담배 또는 담배나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담배, 시가, 미니어처 시가, 클로브 담배, 무연 담배, 스너프, 씹는 담배, 베텔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단, 학생 본인의 처방 제품 사용 및 소지는 제외;

(i) 외설적 행위를 하거나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경우;

(j) 건강 및 안전법 제11014.5조에 정의된 약물 관련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 협상, 제안한 경우;

(k) (1) 학교 전체 활동을 방해한 경우(행정 관리자에 의한 정학만 가능, 퇴학 불가)(9-12학년);

(l) 도난당한 학교 재산 또는 개인 재산을 알고도 받은 경우;

(m) 모조 총기를 소지한 경우;

(n)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o) 학교 징계 절차에서 신고자 또는 증인으로 참여한 학생을 증언 방해나 보복 목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 경우;

(p) 처방약 소마(Soma)를 불법으로 판매, 제공, 협상, 제안한 경우;

(q) 신고식에 참여하거나 시도한 경우;

(r)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위로 특정 학생 또는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행위(전자적 행위 포함). 전자적 성적 괴롭힘도 포함됨(교육법 48900 (r));

(s)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거나 가하려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경우(정학만 가능).

48900.2 성희롱 행위 (4-12 학년 해당).

48900.3 증오 폭력을 유발하거나, 시도하거나,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경우 (4~12 학년 해당)

48900.4 학생 또는 교육구 직원에 대한 고의적 괴롭힘, 위협, 협박 행위 (4-12 학년 해당).

48900.7 학교 관계자 또는 학교 재산에 대한 테러 위협 행위.

정학 조치 전에, 교장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학생과 비공식 면담을 실시하여, 정학 조치의 사유(정학 전에 시도된 다른 교정 방법 포함)와 증거를 설명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과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교육법 제 48911 조). 단, 학교에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생명, 안전, 건강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긴급 상황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식 면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학 및 퇴학 사유를 참조하십시오.

퇴학 권고 사항 (교육법 제 48915 조 기준)

교장 또는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 외부에서의 학교 활동 중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질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교정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퇴학을 권고해야 합니다:

1.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 학생에게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칼이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3. 불법적으로 약물을 소지한 경우(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 첫 번째 위반으로, 농축 대마초를 제외한 마리화나 1온스(약 28g) 이하 소지;
   - 학생이 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일반의약품 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소지한 경우.
4. 강도나 공갈 행위를 저지른 경우;
5. 학교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 또는 구타.

교장 또는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 외부에서의 학교 활동 중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정학 시키고 퇴학을 권고해야 합니다:

1. 총기를 소지,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2. 타인에게 칼을 휘두른 경우;
3. 불법 약물을 판매한 경우;
4.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5. 폭발물을 소지한 경우.

학교장 또는 교육감은 위 항목 외에도 교육법 제 48900 조에 명시된 사유를 바탕으로 퇴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성적 비행 (Student Sexual Misconduct)

성폭행, 성적 접촉, 성희롱 등을 포함한 성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타이틀 IX 연방법이 주(state)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성적 부정행위가 제기된 경우, 학교장은 관련 학생과 초기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타이틀 IX 절차에 회부할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 인권 사무국(Office of Student Civil Rights, OSCR)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정학 및 퇴학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취할 때는 법적으로 추가적인 절차와 고려사항을 요구합니다.

정학

특수교육: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정학 될 경우, 학교 직원은 행동중재계획(BIP)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IEP) 회의가 필요한지, 또는 기존 BIP 를 검토 수정해 문제 행동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도 및 개입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정학을 받아 누적 10 일에 도달하면, 정학 첫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학 IEP' 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IEP 팀은 추가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섹션 504: 섹션 504 계획을 가진 학생은 일반 교육 학생으로 간주되며, 일반 교육 학생과 동일한 일수로 정학 될 수 있습니다. 정학 10 일에 도달하면 섹션 504 명시적 결정 회의(Section 504 Manifestation Determination)를 통해 현재 504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 조치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퇴학

특수 교육: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퇴학 권고를 받기 전에, IEP 팀은 "퇴학 분석 IEP 회의"를 개최하고 "행동 발현 결정 분석(Manifestation Determination Analysis)"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퇴학당하는 경우, 퇴학 기간 동안 IEP 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퇴학 기간 동안 "퇴학 후 지원 서비스"(아래 "퇴학 후 재활 및 복학" 참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의 IEP 에서 결정된 가장 적절한 교육 환경에 배정됩니다.

섹션 504: 섹션 504 계획을 받는 학생의 퇴학은 교육 배정 변경으로 간주되며, 학교의 섹션 504 팀이 "섹션 504 행동 발현 결정 분석(MDA)" 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징계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한 직접적 결과가 아니거나, 해당되는 경우 학군이 섹션 504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직접적 결과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퇴학 권고가 불법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소지와 관련된 경우, 학생은 섹션 504 가 제공하는 절차적 보호(교육 배정 변경 전 행동 발현 결정 분석 요구 사항 포함)를 상실합니다.

정학 및 기회 전학에 대한 항소
정학 및 기회 전학에 대한 항소는 해당 지역(Region) 교육청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학 후 재활 및 복학
교육법(EC) 제 48916 조 및 48916.1 조에 따라, 퇴학당한 학생은 교육 프로그램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모든 퇴학생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AB 922 프로그램"을 학생 징계 및 퇴학 지원팀(SDE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학은 교육위원회(Board)가 퇴학을 결정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육위원회 결정 이후, AB 922 상담사는 복학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퇴학생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퇴학생에게는 행동 개선, 출석률 향상, 학업 성적 향상 등을 포함한 재활 계획이 수립됩니다. AB 922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이 전통적인 학교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때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회 전학

기회 전학(OPPORTUNITY TRANSFERS)은 LA 통합교육구 내에서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계획된 전학 조치로, 교정 목적의 대체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이전 개입 조치들이 효과를 보이지 않거나, 현재 학교에 계속 재학하는 것이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시행됩니다. 기회 전학의 목적은 학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학습에 적합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법 제 35160 조, 제 35160.1 조].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및 폭력 – 예방 및 금지

교육구는 약물 남용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 개입 전략,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 복지 기관 연계 시스템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흡연, 전자담배 사용, 모든 담배 제품, 마리화나, 알코올, 기타 약물(처방약 오남용 포함)의 사용은 교육구 소유 또는 임대 건물 및 차량 내에서 모두 금지됩니다.

공고-3403.1, 아동낙오방지법(NCLB) 및 타이틀 IV 안전하고 약물 없는 학교 법, 웰니스 설계도, 통합 학교 안전 계획은 약물 남용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개입을 요구합니다. *공고-3277.2* 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약물, 알코올, 담배 등과 관련된 예방, 조기 개입, 중단, 개입 및 지원 자료*를 안내합니다. 교육구가 채택한 개입 자료는 https://heplausd.net/preventioneduca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로 구성된 예방 교육 자료는 *공고-3398.1, 공고-3404.1, 공고-3405.1* 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K-12 학년 학생은 학생 일반 건강 교육 과정에 약물 및 담배 남용 교육을 받아야 하며(보건안전법 제 11998 조, 교육법 제 51260, 51890 조), 약물 및 폭력 교육 내용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건강 교육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매년 6~10 시간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및 폭력 예방 교육을 권장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펜타닐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법 제 49414.3~49478 조는 학교가 오피오이드(아편 유사제)의 위험, 사용 방지 전략, 과다복용 시 약물 개입 방법 교육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직원 교육에도 오피오이드 예방 및 개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제 51203 조는 약물 교육에 과도한 알코올 사용의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은 이러한 기기를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 308(a)(1)조(H)].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을 사용하거나 소지, 판매 제안, 협상하는 학생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기 및 관련 용품은 압수되며, 학생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해당 기기가 위험 물질로 간주되어 폐기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교육과정국(Instruction Division) 산하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해당 지역사무국의 사회정서 학습 지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성 약물의 위험성

펜타닐과 같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되는 합성 약물은 현재 청소년 사이에서 국가적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밀매업자들은 값싸고 강력하며 치명적인 펜타닐로 가짜 약을 만듭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 배, 모르핀보다 100 배 강력할 수 있습니다. 펜타닐은 무취, 무미, 무색이므로 사람들은 가짜 약을 복용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섭취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한 알로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교장에게 문의하거나 https://www.lausd.org/Page/18694 (교육법 제 48985.5 조)을 참조하십시오.

비상 대응

공립학교는 비상 상황 시 지역사회에서 매우 안전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필드 법(Field Act)에 따라 다른 공공건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보다 지진 피해가 적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화재 경보, 스프링클러 등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화재/생명 안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학교 또는 교육구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상황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학부모 포털을 통해 또는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을 학교 현장 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며, 필요할 경우 다른 대체 장소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 발생 시에는 교실에서 벗어나 건물에서 떨어진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 지정 대피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봉쇄(Lockdown) 또는 실내 대피(Shelter-in-Place)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건물 내부로 이동시켜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자녀를 데리러 오는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교 외곽에 위치한 '요청 게이트(Request Gate)'로 이동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비상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법적 보호자 재결합 절차가 시작되는 지정 장소입니다. 학생은 학생 비상 연락처 정보 양식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인계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비상 연락처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변경 시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의 '재결합 게이트(Reunion Gate)'에서 신원이 확인된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만 인계됩니다.

폭력 위협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잠긴 교실 등 안전한 공간에 대피하며, 캠퍼스가 안전하다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까지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 보호된 공간에 머물며, 안전이 확인된 후에만 인계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학교 익명 신고(LASAR-LAUSD) 모바일 앱

로스앤젤레스 학교 익명 신고(LASAR-LAUSD) 모바일 앱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관리하고, LA 학교경찰국이 운영합니다. 이 앱은 학생, 학부모/법적 보호자,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SAR-LAUSD 는 학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사용합니다. 긴급 상황이나 즉시 대응이 필요한 안전 문제는 911 또는 LA 학교경찰 통신센터(213-625-6631)로 신고해야 합니다. LASAR-LAUSD 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총기 안전 보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캠퍼스 내 총기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총기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총기 부주의 보관 방지 의무 등 법적 책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Safe Storage of Handguns(로스앤젤레스 시 조례 55.21 조) 및 Criminal Storage of a Firearm(캘리포니아 형법 25100(A)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기 없는 안전한 학교

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총기 소지는 연방법인「총기 없는 안전한 학교법(Gun-Free Safe Schools Act)」및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학생은 체포,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학이 권고됩니다. '소지'에는 사물함, 가방, 배낭 또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통합 해충 관리(IPM)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방 및 주 법률, 카운티 조례를 준수합니다. 해충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과 학교 건물/부지의 보전을 위해 방제 됩니다. 교육구의 목표는 사람, 환경, 재산을 보호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방식으로 해충 문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육구 정책은 장기적 예방에 중점을 두며, 해충 관리 방법 선택 시 비화학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살충제 및 제초제 제품은 반드시 환경보건안전국(OEHS)의 철저한 성분 및 사용 위험성 검토 후 승인되어야 하며, 교육구 소속 자격증을 소지한 방역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계약자, 학생,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직접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법적 보호자, 교직원, 학생에게 IPM 프로그램 및 목표, 정책, '사전 통지 요청서', 승인된 제품 목록을 안내합니다(이 핸드북에 포함).

다음 정보는 학교 본 사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구에서 승인한 살충제 제품 목록;
2. 해당 학교에서의 IPM 활동 기록;
3. 살충제/제초제 사용 72시간 전 통지를 원하는 학부모/법적 보호자를 위한 '사전 통지 요청서'(단, IPM 프로그램 담당자가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경우는 제외).

자녀가 살충제/제초제 노출로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사전 통지 요청서'에 기재해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살충제/제초제 사용 시 해당 구역에는 사용 72 시간 전과 사용 후 지정된 기간 동안 경고 표지판이 눈에 띄게 게시됩니다. 사용 후 경고 표지판 게시 기간은 사용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잔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상 상황 시에는 사용 시점에 경고 표지판이 게시됩니다. IPM 프로그램 및 정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시설관리운영부에 213-241-0352 로 문의하거나 https://www.lausd.org/Page/18939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면 및 납 관리

각 학교에는 석면 위험 비상 대응 법(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에 따라 석면 관리 계획(Asbestos Management Plan)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학교 건물 내 석면 함유 자재의 위치와 해당 자재의 상태가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학교는 석면 제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교직원과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석면 관리 계획은 6 개월마다 갱신되며, 학교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80 년 이전에는 미국 전역에서 납이 포함된 페인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최신 페인트에도 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 함유 페인트 및 코팅에 대한 금지 규정은 세라믹 유약(ceramic glazes)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라믹 바닥 타일에도 미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A 통합교육구는 학교 내 모든 칠해진 면, 코팅된 표면(벽, 창틀, 공용 보관함 등), 세라믹 타일이 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교육구는 세라믹 타일 또는 칠해진 표면을 철거하거나 작업하는 모든 교직원 및 계약자가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만 6 세 미만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이러한 보수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 및 학교 직원에게 사전에 공사 내용을 알리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행한 안내서 "납 안전 인증 개조 가이드(The Lead-Safe Certified Guide to Renovate Right)"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납의 위험, 건강 미치는 영향, 공사 절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pa.gov/lead/renovate-right-important-lead-hazard-information-families-child-care-providers-and-schools . 납 관련 보수 작업에 대한 보호자 및 교장 통지 사항은 환경건강안전국(OEHS) 안전 경고 제 19-03 호(Safety Alert No. 19-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은 배관 및 설비에도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수질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식수 내 납 검사를 실시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내 모든 학교는 납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식수 내 납에 관한 정보와 검사 결과는 https://achieve.lausd.net/Page/3450 에서 확인하거나, 학교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OEHS 에 OEHSconstruction@lausd.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메건 법(Megan's Law) 통지

학부모/법적 보호자 및 일반 시민은 해당 교육구 관할 지역 경찰서 본부에서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형법 제 290.4 조]. 교육구 정책에 따라, 학교장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매 학년도 초 또는 봉사활동 시작 전, 모든 자원봉사 신청자(교육구 직원 자원봉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메건 법 웹사이트(http://www.meganslaw.ca.gov/)를 통해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

신고 의무 사항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란 다른 사람에 의해 우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미성년자 상업적 성 착취를 포함한 성적 학대, 고의적 잔혹 행위, 정신적 고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방임은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부주의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로, 음식, 의복, 의료 제공을 고의로 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교육구 직원 중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즉시 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적절한 아동 보호 기관(지역 경찰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등)에 신고해야 하며, 36 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학교경찰국(LASPD)은 *법적으로 아동 보호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LASPD 경찰관은 아동 학대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학생 기록

학생 기록 열람, 검토 및 내용 이의 제기에 대한 학부모 권리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및 만 18 세 이상으로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없는 학생은 학생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록 열람은 반드시 정규 수업 시간 중에만 가능하며,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또는 해당 학생)와 학교 관계자 간에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이때 반드시 교육구 인증 교직원이 동반하여 파일 관리자로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학생의 기록 안에 다른 학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또는 해당 학생)는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또는 해당 학생)가 학생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본이 제공됩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 지역 사무소는 사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 이외의 모든 학생 기록에 대해, 캘리포니아 교육법(EC) 제 49070 조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또는 졸업생)가 해당 기록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학교 교장과의 면담입니다. 교장이 이의제기를 인정하면 학생 기록이 수정 또는 삭제됩니다.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역 교육감에게 제출되며, 교육감은 이의제기를 인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 시 학생 기록이 수정 또는 삭제되고, 기각 시 교육위원회에 재차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중립적인 패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학생 기록이 수정 또는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기각될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는 학생 기록에 자신의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남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서면 기록은 학생 기록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보관되지 않을 때까지 학생의 학교 기록 일부로 남게 됩니다.

1.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성적 변경 요청 절차(Grade Change Request Process)를 참고하십시오;
2. 교직원이 개인 참고용으로만 보관하고, 대체 교직원을 제외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기록이나 정보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또는 성인 학생이 열람/검토/이의 제기할 수 있는 학생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학생이 타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의 요청이 서면으로 접수되면 학생 기록이 이전 학교에서 해당 학교로 이관됩니다.

불만 제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학생 기록 관련 교육구 절차에 대한 불만 사항을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또는 미국 교육부 가족 정책 준수 사무실(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 Washington, DC 20201)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소/비상 연락처 변경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의 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LA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이하 '학부모')가 공식 학생 비상 연락처 정보(Student Emergency Information Form)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법 제 49408 조]. 모든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의 입학 시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 변경 시마다 또는 최소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서면(U.S. 우편) 및 음성(전화, 휴대전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상 연락처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집 주소 및 현재 전화번호(휴대전화, 이메일 포함);
2. 직장/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3. 비상시 학생을 데리러 오고 돌볼 수 있도록 허가된 비상 연락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학부모/법적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4. 학생이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노선 정보, 노선 번호, 승/하차 위치 포함. 장애 학생의 경우, 비상시 학생을 인계 받을 수 있는 다른 성인도 지정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 비상 연락처 양식에 명시된 사람에게만 인계되며,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개별 사례에 대해 서면으로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학부모는 매년, 그리고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비상 연락처를 갱신해야 하며, 비상 연락처의 전화번호는 다음 부모 포털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https://parentportalapp.lausd.net/parentaccess/ .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기타 정보는 반드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학교 사무실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등록 허가(Continuing Enrollment Permit), 교육구 내 전학 허가(Intra-District Permit) 권리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름/성별 표기 변경 요청

학생 기록에는 법적으로 인정된 학생의 이름과 성별이 표기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성인 학생이 법적으로 인정된 이름/성별과 다른 이름/성별로 학생이 불리기를 원할 경우, 학교에서 이름/성별 표기 변경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호 이름/성별은 대부분의 교육구 공식 문서와 기록에 반영되지만, 법적 이름/성별은 법률상 요구되는 기록에 계속 사용됩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름/성별이 변경된 경우,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학생 기록이 업데이트됩니다.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 따른 권리 안내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과 캘리포니아 교육법(EC) 제 49060 조 이하에 따라,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및 만 18 세 이상의 학생(“자격 있는 학생”)은 학생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학교는 교육 기록 열람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열람을 요청하려면,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유자 또는 자격 있는 학생은 열람하고자 하는 교육 기록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학교장(또는 적절한 학교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직원은 열람 일시와 장소를 조정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2. 학생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록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정을 요청하려면,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또는 자격 있는 학생이 학교장(또는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기록의 부분과 그 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가 요청된 대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는 해당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학생 기록, 부모의 열람, 검토 및 내용 이의 제기 권리"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FERPA/주 법률이 동의 없이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가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PII)를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유자 또는 적격 학생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없이 공개가 허용되는 한 가지 예외는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는 학교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직무상 교육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a. 학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고용된 행정직, 감독직, 교사, 지원직(보건 의료진, 학교 경찰 포함) 또는 학교 이사회 위원입니다;
        b. 학교 외부의 자원봉사자 또는 계약자로, 학교가 자체 직원을 사용할 경우 수행할 기관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며, 교육 기록의 PII 사용 및 관리에 대해 학교의 직접 통제를 받는 사람(예: 변호사, 감사관, 의료 컨설턴트, 서비스 제공자, 치료사 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호자, 학생 또는 다른 학교 관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학교 또는 교육구가 FERPA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미국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FERPA 를 관장하는 사무국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FERPA 는 학생 교육 기록에서 개인정보(PII)를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FERPA 규정 제 99.31 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에게의 공개, 일부 법원 명령 또는 적법한 소환장에 따른 공개, 승인된 디렉터리 정보의 공개,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의 공개를 제외하고, FERPA 규정 제 99.32 조는 학교가 공개 내역을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및 자격이 있는 학생은 공개 내역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학교는 다음 범주에 속하며 합법적인 교육적 목적을 가진 요청자에게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또는 적격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PII 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다고 학교가 판단한 학교 내 다른 교직원(교사 포함)에게 공개. 여기에는 학교가 기관 서비스 또는 기능을 위탁한 계약업체, 자문업체,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며, FERPA 규정 제99.31(a)(1)(i)(B)(1)-(a)(1)(i)(B)(2)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99.31(a)(1)조];
2. 학생이 진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거나 이미 등록한 다른 학교, 학교 시스템, 고등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공개(전학/진학 관련 사항에 한함). FERPA 제99.34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9.31(a)(2)조, 교육법 제49068조];
3.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이 거주하는 주의 교육 당국(예: 캘리포니아 교육부)과 같은 주 및 지역 교육 당국, 미국 회계감사원(Comptroller General), 미국 법무부 장관(U.S. Attorney General), 미국 교육부 장관(U.S. Secretary of Education)의 지정 대표자에게 학생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의 감사 또는 평가,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법의 집행 또는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FERPA 규정 제99.35조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들 기관은 자신들이 지정한 공식 대리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여 감사, 평가, 법 집행 또는 준수 활동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99.31(a)(3), 99.35조]
4. 학생이 신청했거나 받은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재정 지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산정하거나, 지원 조건을 결정하거나,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99.31(a)(4)조];
5. 주 법령에 따라, 학생 기록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사법 제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의 보고 또는 공개가 특별히 허용된 주 및 지방 공무원 또는 기관에 학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ERPA 제99.38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99.31(a)(5)조];

6.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학교를 대신하거나 학교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정보 공개: (a) 예측 시험을 개발, 검증 또는 시행하기 위해; (b)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또는 (c)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제99.31(a)(6)조];
7.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개. [제99.31(a)(7)조];
8. 학생이 IRS 세법상 부양가족일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공개. [제99.31(a)(8)조];
9. 16세 이상 또는 10학년을 마친 학생에게 공개;
10. 14세 이상 동반자 없는 노숙자 청소년에게 공개;
11. 비상 상황에서 학생 또는 타인의 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적절한 사람에게 공개. 이 경우 FERPA 규정 제34조 제99.32(a)(5)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학생의 학자금 지원 신청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단, 학생이나 그의 부모/법적 보호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다음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자금 지원 자격 여부 결정, 지원 금액 산정, 지원 조건 결정, 또는 지원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13. 법원 명령 또는 적법한 소환장에 따른 공개. [제99.31(a)(9)조];
14. 학생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 정부, 지역 정부 또는 부족 아동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15. 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비상 상황에서, 해당 정보가 학생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는 FERPA 규정 제99.36조의 요건에 따릅니다. [제99.31(a)(10)조];
16. 학교가 FERPA 제99.37조에 따라 “디렉토리 정보(directory information)”로 지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또는 해당 자격을 갖춘 학생이 정보 공개를 거부(opt-out)하지 않았을 경우(또는 노숙자 가족인 경우 공개에 동의한 경우(opt-in)), FERPA 제99.31(a)(11)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디렉터리 정보(Directory information)는 공개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정보로,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 기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정보의 주요 목적은 학교 또는 교육구가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특정 정보를 일부 학교 간행물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극 프로그램 팜플렛에 학생 이름과 역할이 기재되는 경우;
2. 연간 졸업앨범 (연감);
3. 우등생 명단 또는 기타 표창 명단;
4. 졸업식 프로그램.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가 위와 같이 학교 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학교 또는 교육구 간행물에 디렉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외부 기관에는 학급 반지 제작 회사나 졸업앨범 출판사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방법은 1965 년 초/중등교육법(ESEA)의 지원을 받는 교육구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군 모집관에게 고등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가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교육구에 통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매 학년도 학교에 제출되는 정보 공개 양식(Information Release Form)에 따라, 다음의 디렉토리 정보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한 보유자가 서면으로 공개 거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된 수신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1. 이름;
2. 주소;
3. 전화번호;
4. 생년월일;
5. 출석 기간 (예: 학년도 또는 학기 기준);
6. 현재 및 이전 재학 학교;
7. 수여받은 학위, 표창, 수상 내역.

디렉토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승인한 제 3 의 수신자 목록은 정보 공개 양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 기록 중 위에 명시된 디렉토리 정보를 학교 또는 교육구가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한 보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 핸드북에 포함된 정보 공개 양식을 통해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맥키니-벤토 노숙자 학생 교육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Act)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의 디렉토리 정보를 공개하려면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한 보유자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학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학생의 디렉토리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12 학년 학생은 캘 그랜트(Cal Grant) 신청자로 간주되며, 가족이 선택적으로 거부(opt out)하지 않는 한 자동 적용됩니다 (교육법 제 69432.9 조). 이 정보는 학자금 지원 자격 판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법 제 49076(a)(2)(B)조]. 거부하지 않은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는, 교육구가 학생의 평균 학점(GPA), 이름, 졸업일, 학교 코드, 학생 ID,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캘리포니아 학자금 지원 위원회(CSAC)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Cal Grant 자격 여부 판별 및 대학 학자금 지원 배정을 위한 것입니다. 교육구가 확인한 GPA 정보 없이는 CSAC 가 Cal Grant 자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 18 세인 졸업 예정자 본인 또는 만 18 세 미만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한 보유자는 Cal Grant 자동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양식을 작성해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권리 보호 개정법(PPRA)
학생 권리 보호 개정법(PPRA)은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유자에게 설문 조사 실시,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 및 사용, 특정 신체 검사와 관련된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에는 다음 권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미국 교육부(ED)의 프로그램으로 전액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설문 조사("보호 정보 설문 조사")가 다음 보호 영역 중 하나(1)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학생이 해당 설문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얻을 권리:
   -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유자의 정치적 소속 또는 신념;
   - 학생 또는 학생 가족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
   - 성적인 행동 또는 태도;
   - 불법적, 반사회적, 자기고발적 또는 모욕적인 행동;
   - 응답자와 가까운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변호사, 의사, 목회자 등과의 법적으로 인정된 특권 관계;
   -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한 보유자의 종교적 관행, 소속 또는 신념;
   - 프로그램 자격 결정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 소득 정보.
2.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고 학생의 참여를 거부할 기회를 가질 권리:
   - 자금 출처와 무관한 모든 보호 정보 설문조사;
   - 학교나 그 대리인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중, 긴급 상황이 아니면서 학교 출석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지만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즉시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경우(단, 청력/시력 검사, 척추측만증 검사 또는 주법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검사는 제외);
   - 마케팅, 판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에게서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단, 학생이나 학교를 위해 교육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평가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경우는 제외).
3. 다음 항목들을 요청 시, 사전 열람 및 검토할 권리:
   - 학생 대상 보호 정보 설문 조사 및 제3자가 작성한 설문 조사;
   - 위에 언급된 마케팅, 판매 또는 기타 배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도구;
   - 교육과정의 일부로 사용되는 수업 자료.

이러한 권리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유자로부터 만 18 세 이상의 학생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성년으로 인정된 미성년자에게 이전됩니다.

본 학군은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유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권리와 보호 정보 설문 조사 실시, 마케팅, 판매 또는 기타 배포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 공개 또는 사용 시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학군은 이 정책을 학년도 시작 시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소 연 1 회 학부모/보호자/교육 권리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또한 학군은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설문 조사에 학생이 참여할 예정임을 미리 알리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학군이 학년도 시작 시점에 관련 활동이나 설문 조사의 날짜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합니다. 학년도 중에 예정된 경우에도, 활동 또는 설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설문 조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전 안내가 필요한 활동 및 설문 조사 항목입니다:

1. 학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판매, 기타 배포 목적으로 수집/이용/공개하는 활동;
2. 미국 교육부 자금 지원이 없는 보호 정보 설문조사 실시;
3. 위에 설명된 긴급하지 않은 침습적 신체 검사 또는 검진;
4.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 권리 보유자 대상 학교 경험 설문 조사;
5.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실 - 미국 교육부 (Student Privacy Policy Office -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성적 변경 요청 절차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생의 성적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착오(실수);
2. 부정행위;
3. 불성실한 평가;
4. 성적 부여 과정의 무능력 (교육법 제49066조).

공립학교에서 수강한 모든 과목의 성적은 해당 과목 교사가 부여한 성적이 최종 성적입니다. 위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성적 변경 요청은 성적표가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담임 교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사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는 학교장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교육청 교육감(Region Superintendent), 최종적으로는 LAUSD 최고 교육 책임자(Chief Academic Officer)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변경 요청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나 지역 교육청 사무실에 문의하여 [공고-1926.3 학생 성적 변경 요청] 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경험 설문 조사

학교 경험 설문조사는 매년 봄에 실시되며, LAUSD 학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2025-26 학년도에는 2026 년 2 월 9 일부터 3 월 20 일까지 각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교사, 노조, 지역사회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된 이 설문조사는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 교직원, 4~12 학년 학생이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합니다. 모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아교육센터, 초등센터, 특수교육센터, 대안학교, 연계형 차터스쿨의 응답자는 학교 경험 설문조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며,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는 온라인 또는 종이/연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자는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고, 자녀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교육법 제 51513 조).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학교 경험 설문조사 결과는 매년 여름에 공개되어, 다음 학년도 학교 계획에 반영됩니다. 학교별 결과는 학교 경험 설문조사 사이트 https://www.lausd.org/Page/19462 의 대시보드와 교육구 오픈데이터 사이트 https://www.lausd.org/opendat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경험 설문조사의 자료 열람 및 추가 정보는 https://www.lausd.org/Page/8397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학 서비스

스쿨 버스

통학 서비스는 승인된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학년도 시작 전에 「자녀의 통학 버스 일정 공식 안내서」(통학 버스 안내문 및/또는 학부모 포털)가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서에는 버스 일정, 버스 이용 규칙, 연락처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기 시작 후 등록한 학생의 경우, 매월 셋째 주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학생 통학 서비스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버스 규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학부모/법적 보호자와 자녀는 개학 전 버스 정류장 위치를 미리 방문하고, 자녀가 버스정류장까지 가장 안전한 길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학생은 버스 도착 예정 시간 5분 전에 승차 준비를 완료하고, 버스가 도착할 때 운전기사가 잘 볼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 서 있어야 합니다;
4.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매일 자녀의 승차 및 하차 시 버스정류장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5. 학부모/법적 보호자와 자녀는 노선 번호, 학교명, 정류장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하며, 버스가 15분 이상 지연될 경우 교통국 스쿨버스 관제실(800-LA-BUSES/ 800-522-8737)로 문의해야 합니다;
6. 노선 조정 또는 학교 등/하교 시간 변경으로 인해 버스 승/하차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 및 기상 조건에 따라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학생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8. 스쿨버스 통학 서비스에 대한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800) LA-BUSES/(800) 522-8737로 연락하거나 https://www.lausd.org/transportation 을 방문해 주십시오;
9. 프리 킨더가든~2 학년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법적 보호자, 성인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지정된 버스정류장에서 인계 받아야 합니다;
10. 버스에서 학생을 인계 받는 모든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 학생 인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쿨 버스 내 행동 규칙

교육구에서 통학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은 운전기사, 학교 직원, 다른 학생,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학교 안과 마찬가지로 학교 버스 안에서도 동일한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서 있는 환경을 유지할 책임은 버스 운전자에게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법령 타이틀 5, 제 14103 조), 버스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통학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버스 기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은 버스 이용 권한 정지 또는 박탈과 같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 내 학생 행동 규칙에 대한 문의는 지역 버스 관리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통학 버스 안내문 및/또는 학부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ttps://www.lausd.org/transportation 을 방문하거나 (800) 522-8737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 GoPass TAP 카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K-12)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무료 메트로 GoPass TAP 카드를 받아 메트로 버스 및 전철, 앤틸로프 밸리 교통국(Antelope Valley Transit, AVTA), 버뱅크 버스 (Burbank Bus), 커머스 시 교통국(City of Commerce Transit), 컬버시티 버스 (Culver City Bus), 풋힐 트랜싯 (Foothill Transit), 글렌데일 비라인 (Glendale Beeline), 가데나 트랜스(Gardena Trans, GTrans), LA 교통국(LADOT) 대시(Dash)버스, LA 카운티 셔틀, 론데일 비트 (Lawndale Beat), 롱비치 트랜싯(Long Beach Transit), 린우드 트롤리(Lynwood Trolley), 몬테벨로 버스 (Montebello But), 노워크 트랜싯(Norwalk Transit), 패서디나 트랜싯(Pasadena Transit), 산타모니카 빅 블루 버스(Santa Monica Big Blue Bus), 토렌스 트랜싯(Torrance Transit)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TAP 카드는 첫 사용 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존 TAP 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66) 827-8646 로 전화하거나 https://www.lausd.org/metro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